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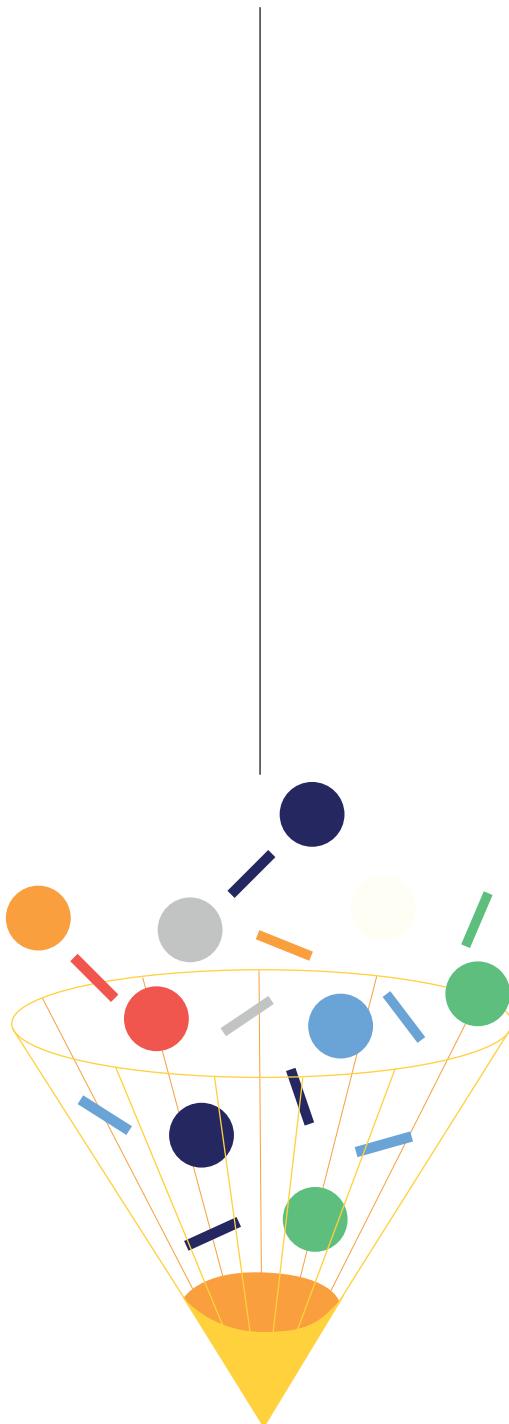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



전국의중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NATIONAL UNION OF MEDIUM WORKERS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



04	01 들어가며
05	1 가이드라인의 목표
07	2 미리 확인해 볼 개념들
12	02 언론 보도와 성평등
14	1 취재 시에 확인하기 - 대표성과 다양성, 고정관념의 문제
20	2 보도 시에 확인하기 1) 일상 속 성차별 표현과 어휘에 대한 주의 사항 2) 갈등을 유발하거나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제목 사용 3) 성평등 보도를 위해 확인해 볼 질문들
30	03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보도
31	1 취재 시에 확인하기
38	2 보도 전에 확인해 보기
39	3 보도 시에 확인하기 1) 젠더 기반 폭력 보도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의 사항 2) 디지털 성폭력 보도에서의 주의 사항 3) 젠더 기반 폭력 보도에서의 2차 피해 방지 4) 젠더 기반 폭력 보도에서 제목 작성 및 표현의 주의 사항 5) 재판 중인 사건 보도에서의 주의 사항 6) 가정 폭력, 교제 폭력 및 아동 관련 사건 보도
63	4 보도 후에 확인하기 1) 피해자 지원 정보를 포함하기 2) 후속 보도하기
66	04 이미지 활용 가이드라인
67	1 여성, 남성에 대한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담아 활용되는 이미지
69	2 성적 대상화 이미지
70	3 젠더 기반 폭력 보도에서의 이미지 문제
74	05 스포츠 보도 가이드라인
75	1 취재 시에 확인하기
76	2 보도 시에 확인하기
82	06 더 생각해 볼 내용들
86	07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01

들어가며

1 가이드라인의 목표

이 가이드라인은 성평등 보도 실천을 위해 취재 과정과 보도 시에 유의할 점들을 정리하여 제시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일종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통해 취재 과정과 기사 제작, 보도 내용, 이미지 문제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와 성평등 실천에 대한 접근법은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첫째, 미디어 기업이 여성의 고용에 있어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등장한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의 패러다임¹에서 여성의 미디어 산업 참여라는 주제는 언론사를 평가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미디어 산업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과 의사결정권자 내에서의 여성 비율 등은 미디어 내에서 전통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젠더 편향을 해소하고,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성평등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여성과 남성의 묘사와 관련된 미디어 콘텐츠에서 양적, 질적 균형 문제입니다. 이는 등장인물의 수적 균형은 물론, 여성 혹은 남성에게 특정한 수동성을 부여하거나 능동성을 부여하는지, 사건의 피해자와加害者에게는 어떤 속성을 부여하는지 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고정 관념이 성차별을 반복하여 재현하는 문제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두에게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동등한 접근이 가능한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세계가 열리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디어 콘텐츠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미디어 접근성에서는 여전히 성별, 장애, 연령 및 계층 등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글로벌 맥락에서 본다면 여전히 여성의 미디어 접근성이 남성보다 높지 않고 차별이 존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접근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질적 동등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에서의 성차별적 혐오 표현과 여성에 대한 공격은 평등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활동을 어렵게 만듭니다.

1
DEI 패러다임에서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성(diversity)은 어떤 분야의 종사자 중에서 과소대표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소수자 관점의 공존을 위해 가시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평(Equity)은 조직의 질차와 분배에서의 공정성과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며, 포함(Inclusion)은 과소대표되거나 이제까지 차별로 인해 배제된 사람들이 조직 내 충분히 존중을 받으면서 참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포용성으로 많이 번역되나, 포용이 담는 사회적 함의를 경계하여 포함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포함을 사용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 중 두 번째 관점, 즉 미디어 콘텐츠에서 성차별을 줄이고 여성의 재현에 있어 양적, 질적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은 언론 보도와 저널리즘 윤리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의 기본 틀은 미디어 콘텐츠 일반으로 확장하여 쓸 수 있습니다.

언론이 성평등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언론은 헌법이 제시하는 성평등 가치에 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적 주체입니다. 헌

법의 이상은 ‘모든 개인의 인간 존엄과 가치의 실현, 자유와 평등에 관한 기본권의 보장’에 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는 ‘모든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기본적 보장’을 어렵게 하는 것이기에 법제도적 교정은 물론, 사회 인식과 문화에서의 변화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대중 인식 전환을 위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맡은 주체가 바로 언론입니다.

둘째, 미디어가 성차별의 재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사회의 다양한 현실들을 보여주고 재현하면서 현실의 특정한 측면만 보여주거나 반복하여 현실 사회의 차별을 유지하고 재생산합니다. 사회의 불평등한 부분에 대한 비판적 시각 없이 미디어를 통해 반복적으로 수용자에게 전달되어 수용자들이 현실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는 문제가 지적되어왔습니다. 특히 성역할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미디어와 교육이 꼽힙니다.

셋째, 이렇게 비판받아 온 미디어의 보도 방식과 재현 양식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한국의 몇몇 언론사 사례는 물론, 해외에서도 미디어 조직과 기자들의 노력을 통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난 미디어 재현의 변화는 실제 수용자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사회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언론의 성평등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미디어의 소유권, 정보 생산 및 저널리즘 영역, 뉴스룸 및 관리직에서 여성이 과소 대표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과소대표성이 여성의 의제와 여성의 요구를 우리 사회에 더 많이 알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미디어 콘텐츠에서도 여성의 가시성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부족한 편입니다. 미디어에서 여성과 소수자의 관점과 의견이 상대적으로 부재하다는 비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제시되어왔습니다. 2020년 Global Media Monitoring Project(GMMP)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미디어에 여성의 등장 비율은 25%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디어가 기존의 차별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반복적으로 재현하고 이것이 정당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역으로 말해, 미디어가 새로운 사회상, 평등에 대한 이상을 제시하고 반복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미디어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의 변화를 추동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 언론의 성평등 보도를 위한 움직임은 이러한 미디어의 힘을 긍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미리 확인해 볼 개념들

아래는 성평등 보도와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개념들입니다. 기사 작성에서 활용하거나 동원해야 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취재 및 기사 작성 시 확인하면 좋을 개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제시한 내용들은 간략한 개요만 제시하고 있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더 읽을거리를 통해 관련 논의를 확인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1) 젠더(gender)

젠더는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이분화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역할과 의무, 자원, 책임을 분배하고 또 남성과 여성 간 위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종 젠더는 사회적 성역할을 구분하는 것으로도 이해됩니다. 남성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여성에게는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젠더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젠더의 의미를 여성과 남성이라는 두 개의 젠더로 나뉜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젠더 정체성이 대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여된 여성성과 남성성으로 이해되어, 젠더 자체가 여성과 남성이라는 두 개의 범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젠더는 사람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 범주로 나누고 이에 위계 질서를 부과하는 사회적 체계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젠더는 단수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또한, 젠더가 이렇게 이분법적 범주로 사회의 질서를 나누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은 젠더 정체성 자체가 다양하다는 것, 이분법 외의 다른 범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하기도 합니다.

2)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

성인지 감수성은 '감수성'이라는 말 때문에 종종 감성의 영역으로 오해되어, 사람마다 다른 주관적인 개념이며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인지 감수성은 'gender sensitivity'의 번역어입니다. 즉, 젠더라는 사회적 권력 관계에 대한 인지, 비판 능력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감정의 문제가 아닌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요구하는 역량입니다.

그렇다면 성인지 감수성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대법원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평등을 이야기하는데 왜 ‘피해자와 공감하기’와 같은 말이 등장하는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젠더가 사회적 권리 체계로 남성과 여성 을 나누어 위계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지각하고 인식한다는 것은 이 위계 자체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 위계 때문에 벌어진 일의 특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기’라는 말이 성립하게 됩니다. 위계에 따라 발생한 바로 그 위치에서 사건을 바라보아야 사건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피해자는 왜 그런 행동을 해야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이 상사와 부하 직원, 교수와 학생 등 위력이 작동하는 관계에서 일어날 때 피해자의 대응에 대해 이해하려면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갖는다는 것은 구조적 성차별을 이해한다는 의미이고, 그러므로 언론 이 차별이 있는 곳에서부터 그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3) 성역할 고정관념(gender role stereotypes) → 성차별적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은 젠더 체계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면서 이것이 고정적이고 타고 태어난 것이라서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여성은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어서 이러한 역할에 적합하고, 남성은 저러저러한 특성이 있어서 저러한 역할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바로 공적 영역 분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남성은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여성은 사적 영역 즉 가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입니다. 이는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라서, 우리 모두의 인식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여성에게 가정이 더 중요하고 남성에게는 직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기사 작성 시 공적 영역과 관련된 주제라면 주로 남성들이 취재원으로, 가정 영역 즉 생활정보, 양육 및 교육, 돌봄과 같은 주제에는 주로 여성들을 취재원으로 상상하는 관행 등에 반영 됩니다. 공적 영역에서 성비를 균형 있게 취재하는 부분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사적 영역에 대한 기사 에서 여성으로 취재원을 한정하는 경향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종국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 관행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성차별적 고정관념입니다. 또한, 이 고정관념에는 개인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성이라서 수학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못 하는 여성과 잘하는 여성이 있는 것입니다. 남성이라서 감정 표현에 서툰 것이 아니라 서툰 남성과 능숙한 남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차별적 고정관념

- 여성에 대하여

여성은 부드럽다. 여성은 돌봄에 능숙하다. 여성은 감정적이다. 여성은 직장 생활에서 남성에 비해 충실하기 어렵다. 여성에게는 모성이 우선이다. 여성은 제도나 질서에 비순응적이다. 여성은 수학적 능력이 부족하다. 여성은 외모를 중시한다. 여성은 질투가 심하다. 여성은 남의 험담을 잘한다 등

- 남성에 대하여

남성은 강인하다. 남성은 씩씩하다. 남성은 감정 표현에 서툴다. 남성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남성은 직장에 잘 적응한다. 남성은 위계질서에 잘 순응한다. 남성은 직장에 충성한다. 남성은 경쟁에 능숙하다. 남성은 수학을 잘한다. 남성에게는 리더십이 있다 등

고정관념은 우리 사회 대중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돌봄 영역을 담당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여성의 비중이 높으니, 돌봄에 대해 재현하려면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미디어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는 복합적 영역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되고 재생산되는 곳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고정관념에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새로운 정보들이 사회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남성도 돌봄 역할의 책임이 있다는 정보가 반복적으로 제시되면 돌봄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언론 보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언론은 고정관념에 문제 제기하고, 새로운 틀을 제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4) 젠더 기반 폭력(gender based violence)

젠더 기반 폭력이란 성별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폭력으로, 주요 대상이 여성인 폭력입니다. UN 여

성차별철폐위원회의 1993년 「여성폭력철폐선언」에서 여성폭력이 ‘젠더에 기반한’ 폭력임을 선언하면서 ‘여성폭력’을 “공적 또는 사적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또는 심리적 해악이나 고통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행위,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압 및 자유의 박탈”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제1조). 이렇게 시작된 젠더 기반 폭력 개념은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점차로 소수자 집단에게 해당 집단의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문제 삼아 이루어지는 폭력이라는 개념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법 조항상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2

젠더 기반 폭력의 범주에 관련하여 김 양희(2013).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이해와 사례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연구 보고서 / 김정혜(2020). 평등권으로서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이화젠더법학>, 12(1), 147-178. 등을 참조 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성별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여성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젠더 기반 폭력의 이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차별 때문에 발생하고 이 효과로 다시 차별을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젠더 기반 폭력에는 다음의 세 가지 범주가 포함됩니다.²

젠더 기반 폭력

• 가정폭력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으로 폭행,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지참금 관련 폭력, 배우자 강간, 여성 할례 및 여성에게 해로운 기타 전통적 관행, 법적 배우자가 아니지만 실제 함께 사는 파트너에 대한 폭력 및 착취 관련 폭력

• 사회폭력

사회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으로 직장, 교육기관 및 기타 장소에서 발생하는 강간, 성적 학대, 성적 괴롭힘 및 위협, 여성 인신매매 및 강요된 성매매

• 국가폭력

국가가 자행하거나 묵인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5) 2차 피해

종종 언론이 성폭력·성희롱 범죄에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주체가 된다는 비판을 받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2차 피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가. 수사 · 재판 · 보호 · 진료 · 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 · 신체적 · 경제적 피해
-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불이익 조치(상세 사례 나열)

2차 피해의 방지는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또한, 피해자 비난의 가속화를 막아야 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댓글을 통한 2차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폭력, 성범죄 보도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알려진 경우, 뉴스 댓글란을 제공하지 않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전혀 기반 폭력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사회적 차별이 일어나기 쉬운 만큼, 언론은 철저한 피해자 보호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02

언론 보도와 성평등

CHECK LIST

취재 시	취재원의 성별 등은 다양한가?	
	취재원을 선정할 때 성별에 따라 관련 영역을 한정하여 생각하지 않았는가?	
	취재원에게 질문할 때 성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한 질문은 없었는가?	
보도 시	보도에 사용된 표현과 어휘 중 성차별적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이 사용되지 않았는가?	
	제목에 성차별적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대결 구도를 만들고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직접 인용 표시 등을 활용하지 않았는가?	

유럽평의회는 2013년 일상 속의 성차별(Everyday Sexism)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성차별 사례를 모았습니다. 일상적 성차별이 유포되고 확산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을 미디어로 보고, 성평등 프로젝트의 핵심에 미디어의 개선을 상정한 것입니다. 2013년 유럽평의회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과 미디어에 대한 권고 Recommendation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gender equality and media>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권고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원주의와 다양성이 필수적이고, 사회의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미디어가 이 다양성 실천의 핵심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의 인식, 생각, 태도 및 행위, 여성과 남성 그리고 소수자들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평의회는 일상 속의 성차별을 밝히는 것에 착수하였습니다.

일상 속의 성차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대표성이란,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사회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각자의 소속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개념입니다. 성차별이 일어나는 구조적 요인의 하나로 대표성 부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편적 개인의 경험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사안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이 있고, 이 입장은 단지 의견의 차이가 아닌, 구조적 차별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차별 사안에서 차별받는 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해당 차별이 정상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대표성의 부재는 사적 영역, 예를 들어 여성은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사안에서 여성의 취약한 위치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공적 영역에서 정치적 대표성의 부재로 인해 여성 관련 법안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는 이러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목소리를 위한 창구입니다.

1

취재 시에 확인하기 - 대표성과 다양성, 고정관념의 문제



CHECK LIST

취재원의 성별 등은 다양한가?



언론 보도에서 취재원의 목소리를 담을 때, 해당 취재원의 성별과 연령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성별에 있어 가능한 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여성의 가시화를 위해 BBC가 채택한 원칙 중 하나가 50:50 원칙입니다. 이는 BBC에서 뉴스 및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할 시, 등장하는 취재원의 성별 비율을 50:50으로 맞추겠다는 선언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 예를 들어 총리는 1명이고 선출된 사람의 성별이 이미 확정된 상황인 경우처럼 성별 균형을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우리 언론이 바로 취재원의 성비 균형을 숫자에 목표를 두고 실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념해야 할 것은 성비 균형 그 자체가 목표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도구입니다. 언론 보도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추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성비 50%의 균형적 재현이라는 도구적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취재원의 성별 균형과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미디어 산업 내 다양한 취재원에 접근할 수 있는 구성원의 다양성이 존재하는가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보도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다수의 미디어 기업들이 조직과 구성원의 다양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을 우리 언론이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더 읽을거리

3

Inclusion의 번역어로 포용성이 자주 쓰입니다. 다만 한국어 사전에서 포용의 의미를 한 주체의 다른 주체에 대한 받 아들임 등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 이 가이드라인은 포함으로 번역하였습니다.

- 넷플릭스, 넷플릭스에 포함³을 뿌리내리다. (Inclusion Takes Root at Netflix: Our First Report) <https://about.netflix.com/ko/news/netflix-inclusion-report-2021>

- 오프콤,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의 형평, 다양성과 포함(Equity, diversity and inclusion in TV and radio) <https://www.ofcom.org.uk/tv-radio-and-on-demand/information-for-industry/guidance/diversity/diversity-equal-opportunities-tv-and-radio>

두 보고서는 미디어 산업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성별, 인종, 연령, 장애, 성소수자 등을 비율을 내어 연도별로 제시하고 매년 이전 연도에 비해 소수자 포함이 향상되었는지를 제시합니다. 이는 미디어 산업 구성원들이 다양할수록, 더 많은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CHECK LIST

취재원을 선정할 때 성별에 따라 관련 영역을 한정하여 생각하지 않았는가?



언론 보도에서 취재원을 섭외하는 경우, 특정한 분야는 특정한 성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널리즘 실천에서 기자님들은 ‘남녀노소’를 모두 취재원으로 삼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즉 보도에서의 대표성과 다양성 실천은 저널리즘의 기본으로 이제까지 교육되고 강조되어 온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대표성의 실현이 쉽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고정관념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제, 어떤 영역은 ‘남성의 영역이다’ 혹은 ‘여성의 영역이다’라고 보는 고정관념이 해당 영역의 취재에서는 다른 성별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서울YWCA가 발행하는 2022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 분석 보고서(시사보도) 등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은 남성이라는 인식입니다. 언론 보도에 인용되는 전문가 인터뷰 대상자의 성비는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결과 70:30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⁴ 그런데 여성 관련 주제라고 여겨지는 경우는 성비가 바뀝니다. 젠더 이슈, 소비 관련 주제 등에서는 여성 전문가 수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남성은 보편적 전문가로, 여성은 여성 관련 영역에만 전문가로 상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뉴스 영역 자체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드 뉴스로 인식되는 정치, 경제 영역은 남성의 대표성이 높습니다. 반면 문화와 소비 영역은 여성의 대표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취재 기자의 성비, 취재원의 성비가 모두 이러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남성과 여성에 할당하는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숫자만 센다면 성비 균형을 이루더라도, 금융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전문가 남성과 일반인 여성을 배치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이는 성평등 보도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은 취재원의 목소리를 담는 데 있어 일차적으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관련 도구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구는 홍보물 이미지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언론 보도와 완전하게 일치하는 도구는 아닙니다만, 고정관념 전환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읽을거리 : 보건복지부, 비차별적 홍보물 제작을 위한 적극적 실천 안내. 2021

<성역할 고정관념 개선>

- 자녀, 부모,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사람을 남성으로도 표현하세요!
- 가족 이미지에서 자녀를 안고 있는 사람을 아빠로도 표현하세요!
-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지역아동센터 선생님 등 돌봄노동자를 남성으로도 표현하세요!
- 요리, 청소 등 가사 일을 하는 행위자를 남성으로도 표현하세요!
- 상담원과 같이 여성집중직종 인물을 남성으로도 표현하세요!
- 버스기사, 건설노동자, 기계수리원, 군인 등 남성집중 직종 인물들을 여성으로도 표현하세요!
- 전문 직업 인물 이미지는 남녀 균형적으로 배치해 주세요!

예를 들어, 정부의 유아동 보육 정책 변화에 대해서 기사를 기획하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 교육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취재원을 섭외할 때 남성과 여성 모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야 할 때 보통은 유아동 보육 담당자인 여성들을 먼저 떠올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성의 목소리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CHECK LIST

취재원에게 질문할 때 성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한 질문은 없었는가?



언론 보도에서 취재원의 목소리를 담을 때, 해당 취재원의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가정한 질문을 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앞서 성별 고정관념의 대표적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다양한 성별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재원의 성별에 따라 고정관념에 기반을 둔 질문을 하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준비한 질문은 이 직업/위치/상황인 여성은 만날 때에도

- 혹은 남성을 만날 때에도 했을 질문인가요?

최근 해외 언론에서 핀란드와 뉴질랜드의 정상회담이 끝난 후의 기자 회견에서 “두 사람은 또래라 만나게 되었나”라고 질문한 기자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존 키 전 뉴질랜드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다면 둘이 또래라 만나게 되었나라고 물었을 것인가?”

이 기자의 질문은 여성은 정치와 관련 없다는 오래된 고정관념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정치 영역에서 여성은 언제나 부차적 존재로 여겨지기에, 패션이나 가사, 육아와 관련된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들 간의 만남을 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만남의 사적 이유를 개인 신상으로부터 추론합니다. 여성이 공적 영역에서 서로 만나는 것은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국가적 의제를 다루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여성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없었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인터뷰 질문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특정 성별에 한해서 준비된 것이라면, 그 질문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질문이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사에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여성과 관련된 기사에서 여성에 대해 언급할 때 신체, 결혼 및 가족 상태를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 가정과 관련된 역할에 여성은 한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성은 소비에서 디자인과 같은 부차적인 것을 중시하고, 남성은 기능을 중시한다는 고정관념 역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예를 들어, 신차 출시와 관련된 기술적 정보 제공을 하는 기사를 기획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러한 기사들은 대체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기에 해당 회사가 표방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 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을 미디어가 그대로 반복해서 널리 확산하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차량을 소개할 때 담는 내용은 차의 성능과 디자인 요소, 그리고 연비 등의 경제적 요소입니다. 성별을 특정하지 않고 차량을 소개할 때에는 기술적 차원을 서술하고 장점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기사가 작성됩니다.
- 여성 고객에게 인기가 있다고 할 때에는 디자인이나 편의가 먼저 언급됩니다. 여성의 차량 선택 이유는 차량의 스타일이나 소위 여성 친화 서비스(유아카 시트 설치 편의성)만 있을까요?

Q 사례

| 현장서 본 신형 **, 매력 인테리어로 여심 자극 대박 예감(2019. 2.28)

| **차 관계자는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만큼 여성 고객들의 반응도 좋다"고 설명했다.(2020.11.15.)

"실제로 인터뷰 당시 여성들이 디자인이 좋다고 하였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재 당시 던진 질문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성의 경험에 대해서(그리고 종종 남성의 경험에 대해서) 쉽게 고정관념에 근거를 둔 가정을 한 채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차량은 여성을 위해 ***을 더 포함하였는데 만족하시는지?'라고 물었다면 그 답은 질문의 범주 내에서 주어집니다.

▣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들

정치 관련 보도	여성은 정치에 적합하지 않다는 고정관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정치인의 정치 과정과 역량이 아닌 부차적 주제에 집중하는 보도• 여성 정치인의 사적 관계(가족, 친구, 연인 등)에 집중하는 보도
상품 및 소비 문화 관련 보도	여성을 소비 영역으로 한정하는 고정관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을 소비자로 상정하고, 기능보다는 디자인 등 특정한 부분을 중심으로 소비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는 보도• 여성 생산자를 인터뷰하면서 이 사람이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을 한다고 가정하는 질문

전문은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s://africa.unwomen.org/
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20/01/
guideline-for-gender-responsive-
media](https://africa.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20/01/guideline-for-gender-responsive-media)

더 읽을거리

유엔여성기구 에티오피아 방송기구 “젠더성찰적 미디어 가이드라인”

UN Women Ethiopian Broadcast Authority, Guideline for Gender Responsive Media, p. 18⁵

여성 경험에 대한 고정관념과 가정을 피하십시오

여성 CEO를 인터뷰하면서, 여성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는 것은 남성과 비교하는 가정을 깔고 있으면서 동시에 여성의 경험이 모두 동일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 ‘여성으로서’라는 표현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질문은 ‘성차별이 혹 당신의 사업을 어렵게 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성과 인터뷰할 때, 남자라면 이러한 질문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2 보도 시에 확인하기

1) 일상 속 성차별 표현과 어휘에 대한 주의 사항



CHECK LIST

보도에 사용된 표현과 어휘 중 성차별적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이 사용되지 않았는가?

일상 속의 성차별 사례는 어휘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상 속 용어들이 가진 성차별적 차원을 드러내고 보도에서 해당 어휘들을 사용하는 것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일상 속의 성차별 어휘가 사용되는 것은 고정관념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을 특별하게 남성과 달리 ‘여**’으로 지정하는 것은 남성을 기준으로 두고, 여성을 이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관행을 반영합니다.

표현과 어휘는 정말 문제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상당수의 표현은 은유를 사용합니다. 은유의 사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론학에서의 실험 연구들은 표현의 차이와 은유의 차이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 내기도 했습니다. 언론이 어떠한 은유적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 은유의 효과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폭력 보도에서 종종 사용하는 ‘몹쓸 짓’은 은유적 표현입니다. 몹쓸 짓이란 악독하고 나쁜 행위를 말하는 뜻이니, 성폭력은 나쁘다는 의미에서 맞는 말 아닌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몹쓸 짓은 여러 가지 범죄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말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성격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몹쓸 짓’은 오히려 성폭력 범죄의 성격을 축소하게 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본질적 속성은 권력 관계에 따른 타인의 권리 침해(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에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짚지 않고, 대략 나쁜 일이라는 함의만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표현이 매우 한정적으로 사용된다는 것 역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서 금융권의 횡령 범죄가 일어났을 때 ‘몹쓸 짓’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성폭력 범죄에만 이러한 일이 쓰이는

것은 이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아닌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거나 사적 영역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젠더 기반 폭력은 여성이 공적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온 구조적 차별의 한 양태입니다. 단지 비윤리적인 개인이 저지른 일탈이라기에는, 이러한 ‘일탈’이 쌓이면서 여성 노동자를 노동 시장에서 부적합한 노동자로 밀어내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개인이 일탈한 것이지만, 여성 노동자는 이러한 일탈의 피해자가 되기 쉬우니 고용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작동해온 것입니다. 단순한 은유이지만, 사실상 뿐리 깊은 성차별적 표현이 바로 성폭력 범죄를 ‘몹쓸 짓’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차별적 어휘와 표현의 사용

성별에 따라 비대칭적 어휘가 있다면 특별한 맥락 없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6
이정복(2017). 국어사전의 차별 표현 기술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배달말>, 61, 199-245.

차별언어를 판별하는 데 있어 사전에 등재되지 않는 용어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교사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에 등재된 단어이나 남교사는 없습니다. 이는 성차별적 시각에서 ‘교사’를 남성형으로, ‘여교사’를 파생형으로 처리하여 기록하는 어휘 관행입니다.⁶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대칭어가 최근 생기기도 하며, 실제로 남교사라는 말이 기사에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인식 속에 여성을 파생형으로 보는 어휘가 일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검사와 남검사, 여성과 남경, 여교수와 남교수, 여변호사와 남변호사, 여류작가와 남류작가 등을 예시로 들어 볼 수 있습니다.

‘남’이 들어가는 어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반면 ‘여’를 붙이는 경우는 일상 속에서 많이 목격됩니다. 이러한 비대칭적 어휘는 공적 영역에 등장하는 여성에 대해서 자주 일어나는 성차별적 관행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이 경우는 ‘여’를 제외한 채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성별 표기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꼭 성별 표기가 필요하다면, 팔호 안에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58세, 여성)과 같은 식입니다. 혹은 여성 검사, 남성 검사 등으로 성별과 직업을 분리하여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어휘는 특별한 맥락 없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차별적 어휘는 문화적으로 인식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언어는 계속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 목록에 있는 어휘가 절대적으로 쓰면 안 되는 표현을 정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오래 쓰여온 어휘와 표현들에 대해 대안어를 생각해 보고 바꾸어나가는 시도를 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안어 역시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으니, 대안어 역시도 그 목록을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성을 사적 영역, 남성을 공적 영역에 두는 어휘

- 외조와 내조
 - 남성에게는 내조, 여성에게는 외조라고 표현하는 것은 안과 밖, 사와 공을 이미 여성과 남성에게 배정한 채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두 가지 모두 배우자의 도움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표현하셔도 무방한 내용입니다.
- 안사람, 바깥사람
 - 위와 동일한 이유로 만들어진 표현으로, 배우자로만 표현해도 됩니다. 요새 거의 쓰이지 않는데, 종종 연령대에 따라 취재원이 언급할 수 있습니다.

출산, 육아, 돌봄이 여성만의 것이라는 여성과 사적 영역 고정관념이 반영된 어휘

- 유모차 → 유아차 (유아와 함께 외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탈것을 어머니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 저출산
 - 저출생 (출산은 여성이 하는 것이므로 저출산 담론은 항상 여성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문제로 바꾸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까요? 이는 여성이 낳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왜 부부가 이러한 결정에 이르렀습니까? 이 부분을 언론은 질문해야 합니다)
 - 공식 통계 용어로는 합계출산율 혹은 출산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 용어를 인용할 때에는 해당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 현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출산이 문제라는 인식이 아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틀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 맘카페 → 육아카페
- 수유실
 - 아기 휴게실 (어머니가 수유를 하기 위해서 사용할 뿐 아니라 아버지 혹은 다른 보호자도 아기의 기저귀를 갈거나 아기가 잠을 자기 위해 사용하는 등, 육아하는 사람이 아기의 휴식과 돌봄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 낙태
 - 임신중지, 임신중단. 낙태는 태아를 기준으로 태어날 날짜 전에 죽어서 나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신중지(임신중단)는 여성의 출산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의 하나로 이를 설명하려는 용어입니다.

결혼과 연애가 정상적인 것이고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라는 관념을 전달하는 어휘

- 미혼 → 비혼(혼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혼인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 미혼모, 미혼부
 - 비혼모, 비혼부(역시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된 경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을 못하고 있다.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 최근 청년 세대의 비혼 현상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 표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 인터뷰 참여자가 한 말이라면 그대로 표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것이 자신의 선택임을 표현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결혼을 아직 못했

다'라는 등으로 설명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출발이나 시작, 처음을 여성에 은유하는 어휘

- 처녀작 → 첫 작품
- 처녀비행 → 첫 비행
- 머리 올린다(골프)

→ 처음으로 필드에 나가다. 혹은 다른 표현도 가능할 것입니다. 어원은 불확실하지만, 조선시대 동기가 정식 기생이 되었다는 말에서 유래한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골프에서 은어처럼 사용되고 최근 방송에도 등장해서, 문제가 있는 용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참여자들과 방송 내에서 대안어에 대한 고민을 나눈 경우도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어휘

성소수자에 대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들이 비정상이라는 함의를 담고 있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 동성연애
 - 성소수자를 정체성과 일상에 대한 포괄적 인정을 통해 존중하기보다는 성애와만 관련하여 한정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피해야 합니다.
 - 변태, 호모
 - 현재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어휘로 사용되고 있으니 언론에서 옮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전환
 - 성별재지정. 트랜스젠더는 개인의 성별을 바꾸었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배정된 젠더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이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성별재지정이 이 상황을 더 잘 재현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젠더 개념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여전히 이분법적 성별에 기초하기 때문에, 대중의 사안 이해를 돋기 위해서라면 성전환으로 알려진 성별 재지정 등으로 부연하여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 동성 성폭력과 같은 표현은 성폭력 사건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 같지만, 관련된 사건 보도에서 댓글을 통한 동성애 혐오 표현을 유발하게 됩니다. 동성애가 비정상적 성적 행위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댓글에 사건의 내용과 상관없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여 동성 성폭력보다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의 성적 지향이 명확한 경우) 남성 간 성폭력/여성 간 성폭력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표현을 꼭 사용해야 한다기보다는, 성소수자 관련 기사가 의도하지 않게 혐오 표현을 유발하게 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 성적 지향에 대한 비차별적 어휘와 표현이 현재 국내 상황에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성적 지향이 오로지 성애와만 관련되어 설명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LGBTQIA+ 외에도 성소수자는 매우 다양한 정체성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서구의 틀로만 해석할 수 없는 한국적 맥락의 차이도 있습니다. 성적 지향과 관련된 취재, 성소수자의 현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할 경우는 당사자가 어떻게 지칭되기를 원하는지, 기사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어휘는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는 당사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밝히기를 원할 때에 한해서입니다. 기사를 통한 이웃팅(동의 없이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표현, 즉 성별에 따라 다른 특성이 있고 그것은 고정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에 벗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전제를 담은 표현은 특별한 맥락 없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특정한 어휘로 결정되지 않지만, 표현의 범위나 특성이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이 있다는 고정관념을 드러냅니다. 어휘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맥락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 섬세한, 보살핌, 미, 부드러움, 약함, 애정 어린 등을 부여하는 표현을 쓰고, 남성에게는 강인함, 뚝심, 활발함, 적극적임과 관련된 표현을 쓰는 경우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외모가 청순하거나 아름답다는 것이 그 자체로 문제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여성의 전문성과 직업에 관련해서 굳이 외모에 대한 언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여성의 전문성이 모성과 관련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애정, 엄마, 사랑과 같은 표현이 동원될 필요는 없습니다.

Q 사례

여성 정치인과 남성 정치인의 묘사 표현 차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그는 국민의힘에서 유일한 벤처기업인 출신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애정을 가진 인물로 평가 받는다(2022.4.13.)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법원 재직 시부터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행정을 경험했고 원만한 성격과 폭넓은 대인관계 등 장점이 많은 후보”라며 “윤 당선인이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물이라 판단하고 행안부장관으로 낙점했다”고 했다.(2022.4.13.)

위의 첫 번째 사례는 여성 장관에 대해서 애정을 가졌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례는 남성 장관에 대해서 행정 경험, 폭넓은 대인 관계, 원만한 성격 등을 사용해 묘사한 것입니다. 남성 장관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 것은 남성에게 이러한 감정적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고정관념과 관련되어 있으며, 반면 여성은 감정에 근거한 리더십을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례 역시, 여성 정치인을 평가하면서 어머니라는 가족 내 역할을 부여하여 이를 표현합니다. 정치인의 역량을 공적 용어로 평가하거나 논의하지 않고 사적 영역의 관계적 용어로 표현하는 것은 여성의 공적 영역 활동에 대한 상상이 고정관념에 의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Q 사례

여성의 특성이 섬세함, 돌봄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처럼 묘사하는 표현

메르켈, 소탈·푸근한 '엄마 리더십' 돌파력 더해 '영원한 총리'로(2017.09.26.)

특히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는 패션이나 외모에 대한 묘사가 많습니다. 물론 패션을 통해 정치적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모와 패션에 대한 묘사의 목적이 이러한 정치적 과정이 아닌 여성 정치인을 평가하는 데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보도는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Q 사례

여성의 외모 중심으로 평가적 묘사 활용

많은 사람들이 우선 주목하는 요인이 ‘외모’입니다. 눈이 크고 피부가 고운 데다 170cm에 가까운 늘씬한 키가 사람들의 이목을 모이게 만듭니다. 외모가 뛰어난 연예인, 스포츠 스타와 다를 바 없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미인 아나운서’ 출신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성 정치인들은 ‘셀럽’이라는 얘기를 듣지 못합니다. 외모가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2022.05.28.).

의원 고등학교·대학교 시절 ‘청순 미모’ 사진 공개(2018.4.28.)

7

경향신문 (2022.7.13). 페미니스트 교사의 '은밀한' 성평등 수업 이야기. 이신애 교사의 수업 사례

아래의 사례는 도쿄 올림픽에 출전한 유도 선수의 시합에 대한 보도 제목을 비교한 것입니다.' 모두 동일인에 대한 보도인데, 여성 선수의 외모를 중심으로, 이성애를 기준으로 작성된 제목이 다수입니다. 마지막 제목만 올림픽의 어떤 종목에서 일어난 일이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알려주는 제목을 사용하였습니다. 여성의 외모에 집중하지 않은 채로 결과 중심적으로 보도했다는 점에서 마지막 제목을 대안적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대안적 보도 방식은 무엇일지를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Q 사례

외모되지, 실력 좋지…반짝반짝 ‘도쿄 일짱들’(2021.7.26.)

- 전 세계 남성들 본방사수 예약시킨 이 사람의 정체는?
- 모델인 줄 아셨죠? 제 정체를 공개합니다
- 승부욕은 유전인가? DNA 물려받은 티가 난다
- ‘눈물의 한판승’ 동메달 획득한 역대 최연소 챔피언

또한,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성이 일하는 노동자인 것을, 주권자인 것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2021년 배우 윤여정씨가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면서 영어로 수상 소감을 말했을 때, 국내 언론은 이 소감을 성역할 고정관념에 맞추어 번역했습니다.

Q 사례

윤여정은 특히 두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아들들이 일하러 나가라고 종용한 덕분이다. 아이들의 잔소리 덕분에 엄마가 열심히 일했더니 이상을 받았다”고 말해 또 한 번 웃음을 자아냈다.(2021.4.26.)

윤여정 배우의 발언은 “thank you two sons who make me go out and work. This is the result, because Mommy works so hard,”였습니다. 이 말은 여성 가장의 노동에 대한 말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은 일하러 나가 생계를 꾸려야 합니다. 이를 아들의 잔소리라고 번역한 한국 언론의 인식은 여성은 남성의 지시를 받는 존재, 혹은 남성에 의해서만 공적 영역에 가시화되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도는 같은 날 같은 사안에 대해서 “처음은 잊지 않은 윤여정 “이 상을 김기영 감독님께””라고 제목을 제시하고,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네요. 저를 일하게 만든 아이들이

요.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게 엄마가 열심히 일한 결과란다.”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그가 두 아들을 키우며 생계를 잇기 위해 연기를 했던 걸 떠올린 것이다.”라고 맥락을 짚어준 기사와도 비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성을 묘사하면서 ‘남성인데도 섬세하다’거나, 여성을 묘사하면서 ‘여성이지만 텔털 하다’라는 등으로 성별 고정관념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성소수자를 묘사할 때에도 이와 같은 고정관념이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남성 성소수자를 묘사하면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하여 표현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해 취재하고 보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취재원이 어떻게 불리기 원하는지를 확인하여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 신원이 드러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젠더 기반 폭력 범죄 보도에는 다른 어떤 보도보다 어휘와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에는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선정적 요소들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알몸’이나 ‘벗방’ 등, 성적 신체를 강조하는 어휘는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에서는 유독 은유적 표현을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어 자체가 만들어질 때,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고민 없이 가볍게 만들어진 뜻이나 용어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대안어들이 지속적으로 고민되어야 합니다.

쓰지 않아야 할 어휘와 표현들

- 성폭력 사건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들 (예시, 알몸, 전라, 은밀한 신체 부위 등)
- 검은 손, 몸을 짓, 나쁜 입 → 성폭력 범죄의 가해 행위를 묘사할 필요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은유를 통해 대략 나쁜 일이라는 의미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 그놈 → 인터넷 뜻이 확장된 것으로, 가해자를 가볍게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 짐승, 늑대, 악마 → 가해자를 비정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가해자만 사회에서 제거하면 되는 문제로 여기게 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 씻을 수 없는 상처 → 성폭력 범죄가 평생 가는 고통이라는 것은 가부장제 하 여성의 정조에 대한 관념을 반영하여 여성이 그렇게 괴로워해야 한다는 관념을 반영한 것입니다.
- 몰래카메라 및 몰카 → 불법 촬영물
- 리벤지 포르노 → 불법 촬영물
- 아동 포르노그라피(아동청소년 음란물) → 아동 성착취물

Q 사례

| 여성 혼자 사는 집 4개월간 침입… 음란행위한 그놈 정체는(2023.1.23.)

위 기사는 다른 언론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Q 사례

| 카드키 빼돌려 싱글 여성 오피스텔 몰래 출입한 분양 사무실 직원(2023.1.23.)

물론 위의 기사에서 ‘싱글 여성’이라고 피해자의 성별과 상황에 대한 명시를 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놈’이나 ‘음란행위’ 등의 표현을 통해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표현을 사용한 것보다는 사건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데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 현행 법제상으로 위 기사에 나온 사례는 ‘음란행위’로 지칭될 수밖에 없긴 합니다. 하지만 사례에서처럼 주거침입을 하여 한 행위를 성범죄 범주로 포함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법이 성범죄를 물리적 접촉에 한정하여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갈등을 유발하거나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제목 사용

CHECK LIST

제목에 성차별적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대결 구도를 만들고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직접 인용 표시 등을 활용하지 않았는가?



제목에 -녀를 사용하거나, 불필요하게 여성의 성별을 강조하여 사건의 맥락을 흐리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 ‘젠더갈등’이 강조되면서 관련된 기사들이 오히려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사회적 성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대남’과 ‘이대녀’는 세대 내 갈등을 성별에 따라 구조화하는 역할을 했으며, 세대 내 다양성을 지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언론이 이 표현을 제목에 강조하여 사용함으로써, 세대 내 갈등을 오로지 성별에 따른 갈등으로 묘사하고 정치적 쟁점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문제로 지적되어 온 관행 중 하나는 제목에 ‘00女’의 사용입니다. 포털 서비스의 구조에 맞추어 제목을 축약하는 가운데, 축약어로 등장한 ‘00女’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성을 기본형으로, 여성은 파생형으로 보는 인식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여성은 대상화하는 표현으로 자주 쓰입니다. 여성은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하면서 해당 여성은 사물화하는 표현으로 만들어진 ‘트렁크女’, ‘월드컵女’, ‘인형女’,

‘엘프女’, ‘파란니트女’ 등은, 사물이나 장소를 여성에 결합하면서 여성 지칭어로 쓰여 여성을 대상화하는 것입니다.

종종 제목에서 여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가해자, 피해자가 모두 여자 중학생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여중생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모호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남학생이 가해자인 경우 “제주 모텔서 또래 학생 가두고 폭행한 부산 중학생 2명 입건”으로 표현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제목의 여중생에서 ‘여’ 자는 예외로서의 여성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목에 갈등을 유발하거나 대결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직접 인용을 남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8

고영철(2012). 한·미 지역일간지 1면 기사의 보도방식 비교 — 기사의 길이, 리드 및 인용구 서술방법, 인용구의 수, 제목의 표현방식 등. <언론과학연구>, 12(3), 37-78.

우리 언론은 해외 언론에 비해서 제목에 직접 인용을 많이 합니다.⁸ 이는 포털 서비스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통해 뉴스를 요약 전달하고, 호기심을 일으켜 클릭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 언론은 정보를 중점적으로 전달합니다.

어쩌면 제목을 통해 클릭을 유도하는 경향은 현재의 포털 서비스 환경에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 인용 제목의 폐해가 크기 때문에, 적어도 성차별이 강화되지 않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갈등 구도로 상정하여 vs 등을 사용

Q 사례

여가부 폐지 논란…“젠더갈등 조장부 폐지” vs “젠더갈등의 힘”(2021.7.7.)

이 사례는 제목의 의미가 모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vs를 사용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젠더 갈등을 조장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성가족부가 젠더갈등의 힘이라는 주장으로 나뉜다고 읽힙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왜 상반되는 주장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정의당이 국민의 힘을 젠더 갈등의 힘으로 개명하라고 비판했다는 내용입니다. 주장이 반대된다면 폐지 주장의 이유와 유지 주장의 이유를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젠더 갈등 조장부라는 말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말한 것인지를 드러나지 않으며 내용조차 정확하지 않은 직접 인용 표시는 직접 인용의 목적, 즉 누가 한 말을 정확하게 이용한다는 것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9

박정훈(2022.11.23). 서울 YWCA <페미니즘으로 미디어 다시보기> 집담회 모두발언

또한, 특정 개인을 공격할 목적으로 페미니즘 관련 주제를 활용하는 관행도 있어 문제입니다. 개인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는 과거의 페미니즘 관련 사건을 제목에 제시하는 것인데 안산 선수에 대한 보도가 대표적 사례입니다.⁹ 서로 별개의 사안임에도, 안산 선수와 관련

하여 페미니즘을 동원함으로써 최근 포털 서비스 댓글에 만연한 안티 페미니즘 분위기를 활용하여 클릭 수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사례

- | '페미 논란'땐 침묵한 안산, 전장연 논란엔 딱 한마디 꺼냈다(2022.4.21.)
- | '페미 논란' 안산, 장애인 후원 비판에 일침…“나는 특수교육과 학생”(2022.4.21.)

모든 직접 인용이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목에 직접 인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서구 연구들의 제안은 직접 인용의 남용이 가져오는 갈등 유발에 대한 것입니다.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안에 대해 강조하거나,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거나,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제안을 담는 직접 인용은 필요합니다. 아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의 핵심 요구 사항을 제목에 인용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입니다.

Q 사례

- | 흥익대, 성희롱·폭언 미대 교수 '해임'…“재발 방지 해야”(2022.4.21.)

3) 성평등 보도를 위해 확인해 볼 질문들

속보가 강조되는 현재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인이 성평등 보도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언론인의 역할은 보도를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평등 보도가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문항들은 성평등 보도를 위해 언론인이 스스로 생각해볼 만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 나의 기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했다.
- 나의 보도를 통해 이 사회의 성평등에 기여할 수도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내가 성차별적인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일상에서 성찰한다.
- 해당 사건에 있어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한다.
-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 보다 좋은 기사를 위해 자사/타사의 동료들과 충분히 이야기한다.
- 트라우마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건 취재 시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심리상담을 받는다.
- 젠더 이슈 보도에서 중요한 것은 속보성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 확인과 젠더 불평등에 대한 인식임을 상기한다.

03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보도

1

취재 시에 확인하기 - 젠더 기반 폭력 취재 체크 리스트

CHECK LIST

피해자 보호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취재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가?
	피해자가 신원을 밝히고자 할 경우, 이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였는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접 인터뷰가 아닌 다른 대안적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피해자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관련 정보를 동의 없이 노출하지 않았는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안정 상태가 확보된 상태에서 취재하고 있는가?
	피해자의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황인가? (인터뷰 통역 선정 및 장소 선정 등)
	피해자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가?
	피해자에게 취재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렸는가?
	피해자의 과거 경험, 사회문화적 배경 및 종교, 인종 등의 맥락에서 민감한 문제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는가?
	급작스럽게 인터뷰를 종료하지 않았는가?
가해자 관련 정보 수집	가해자 관련 정보 과정 및 수집 내용이 피해자에게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였는가?
	사건 관련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질문을 하지 않았는가?

국내의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관련된 보도 준칙을 살펴보았는지를 먼저 점검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1

무엇보다 취재 전, 취재원에게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취재에 참여하는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의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고,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설명이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속보를 강조하는 최근의 온라인 환경에서 다소 어려운 일로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이는 젠더 기반 폭력이 가진 속성 중 하나이기에 인터뷰에 참여하는 피해자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젠더 기반 폭력은 성폭력,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이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이 문제가 사적 영역의 폭력으로 개인적 문제로 취급되지 않도록 취재, 보도 시 더 세심히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말과 관련된 주변 정보의 수집은 물론 필요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취재 과정에 의한 2차 피해를 경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젠더 기반 폭력 취재의 경우, 해당 내용이 보도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숙고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젠더 기반 폭력 취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폭력의 문제를 폭로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가해자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무화시킬 수 있거나,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 가능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히 보도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젠더 기반 폭력과 관련하여 취재 시에 사전 준비하거나 주의할 점을 표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취재 대상과 관련하여 여러 고려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해외 가이드라인은 아동 피해자의 경우에는 직접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아동은 재판 과정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히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전문가가 함께 조사할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이 언론에 의해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언론이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직접 노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적기 때문에, 관련 사안의 취재는 보호자 및 관계자 그리고 관련 지원 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 13세 미만의 아동은 절대로 인터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인터뷰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라도 보호자나 관계자와 의논하여야 합니다. 보호자가 동의한 상황이라고 해도, 피해 아동이 동의한 것이 아닐 수 있으며, 아동에 대한 정보가 노출될 경우 아동이 입게 되는 피해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더욱 심각해집니다.

아래의 논의는 주로 성인 대상의 취재 가이드라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

CHECK LIST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취재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가?

 **영상 기록 등에는 동의를 받는다고 해도 주의해야 하며,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기타 자료를 사진 등으로 기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취재 내용의 보안이 필수적이지만, 때로 영상 기록이나 사진 기록 등이 유출되면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따라 음성 녹음 등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취재 기법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을지를 확인합니다.

CHECK LIST

피해자가 신원을 밝히고자 할 경우, 이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였는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접 인터뷰가 아닌 다른 대안적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피해자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관련 정보를 동의 없이 노출하지 않았는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안정 상태가 확보된 상태에서 취재하고 있는가?

피해자의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황인가?(인터뷰 통역 선정 및 장소 선정 등)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였는지 확인하는 질문들입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밝힐 경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이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피해자에 대한 아웃팅 금지, 피해자의 안정 상태, 통역 및 장소 등의 준비 사항을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인터뷰와 취재 준비에는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충분한가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안정된 상태에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혹 격앙되거나 감정적 어려움이 생길 경우는 인터뷰를 중지하고 추

후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 맥락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통역사, 편안한 장소 선정 등 피해자가 처한 인종, 계층, 젠더에서의 취약성을 고려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소수자의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 신원 노출에 대해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상황이며, 아웃팅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적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미성년자의 경우는 미디어에 노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동의하고 더 나아가 노출을 요구하더라도, 기자가 향후 일어날 수 있는 피해의 정도를 보호자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영속성은 디지털 정보가 한 번 게시된 이후로 해당 정보의 유통을 계시자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미성년자가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 피해를 환기하는 기사를 계속 접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CHECK LIST

피해자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가?

 피해자는 언론 취재를 통해 2차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재진이 피해자의 말이 진실인지를 의심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피해자를 지나치게 동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2차 피해 P.10

피해자의 언론에 의한 2차 피해 경험은 다층적으로 발생합니다. 취재 과정은 물론 기사 및 기사 보도 이후 온라인 환경에서의 무책임한 댓글 등을 통해 가속화되곤 합니다. 취재 과정에서부터 기자가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가해자 편을 든다고 느끼게 되면 인터뷰를 거부하거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젠더 기반 폭력의 상세 사항에 대해 묻는 것 역시 피해야 합니다. 폭력의 피해 경험을 말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이를 취재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밀하고 정리하는 기회가 피해자가 이 문제를 구조적 폭력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해자가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방향으로 취재와 보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묘사하게 유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트라우마의 틀에 갇혀 피해자를 불쌍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 역시 피해야 합니다. 피해 이전의 삶이 있고 미래가 있는 인간으로서 어떤 용기를 보여주는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CHECK LIST

피해자에게 취재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렸는가?



피해자에게 기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보도될지에 대해서 사전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사가 실제로 어떻게 보도될지 모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편을 들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가 인용될 수 있다는 불안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인터뷰가 어떤 방식으로 기사화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 정보 공유된 내용과 지나치게 다른 방식으로 자료와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최근 디지털화된 뉴스 소비 환경에 따라 뉴스 내용이 오랜 기간 피해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HECK LIST

피해자의 과거 경험, 사회문화적 배경 및 종교, 인종 등의 맥락에서 민감한 문제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는가?



피해자의 과거 경험 등을 캐물어 이를 통해 현재 사건의 인과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타 인종 피해자 및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문제 등을 취재할 때 결혼 이주 여성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종교 및 인종, 사회문화적 배경의 맥락에서 민감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

4.16 재단. <피해자 권리 매뉴얼>.

피해자에 대한 질문은 개방형 답안으로 민감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 받아 작성하는 것이 권유되고 있습니다.

4.16 재단은 피해자 입장에서 본 재난보도 가이드라인¹⁰에서 극심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피해자에게 ‘어떤 느낌이세요’와 같은 질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안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거 경험과 사생활에 대한 정보는 주로 가해자의 변호인이 피해자 비난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적 이력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별다른 제도적 장치가 없어 가해자의 변호인은 피해자 비난을 위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활용합니다. 따라서 언론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재판 과정 등에서 경험한 고통을 다시 환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언론이 해당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사건 보도에 피해자의 과거 경험은 필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 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인종적, 문화적 맥락이 다른 경우 한국 사회의 맥락과 달라 뜻하지 않게 피해자를 불쾌하게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타 문화의 맥락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CHECK LIST

급작스럽게 인터뷰를 종료하지 않았는가?



언론이 갑작스럽게 인터뷰를 종료한다면 피해자는 혹 원하는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가라는 생각에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인터뷰 시간을 알려주고, 질문이 몇 개 남았는지 등을 환기하며, 혹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CHECK LIST

가해자 관련 정보 과정 및 수집 내용이 피해자에게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였는가?
사건 관련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질문을 하지 않았는가?



가해자 관련 정보 수집은 가해자를 공정하게 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반론을 입수하고 다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언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되거나 피해 경험을 환기하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해당 질문이 피해자 책임을 묻는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해자 인터뷰 및 가해자의 말을 보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BBC는 가해자 인터뷰나 사건의 재구성 과정 보도가 해당 사건의 피해자나 친인척들에게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언론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거나, 사건에서 피해자의 책임 요인을 찾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왜 당시 바로 항의하지 않았는가”와 같은 질문의 이중성이 있는 것입니다. 항의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묻는 것처럼 피해자가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항의하기 어려운 이유를 묻는 방식 등 질문의 방식을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읽을거리

: Center for Women's Global Leadership에서 발간한 헨드북¹에 제시된 인터뷰 관련 주의 사항(일부)

- 학습이 필요합니다. : 트라우마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부적절한 질문이나 언어에 대한 전문가 조언, 문화 및 인종 등을 고려한 언어 등
- 인터뷰 참여자와 신뢰를 구축하고, 대가성으로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님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 성적 학대/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여성 기자, 사진기자, 카메라 스태프, 통역사 등과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면 사전에 질문을 보내 공유하십시오.
- 왜 이 보도를 하는지 스스로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공익을 위한 것인지, 폭력 행위의 세부 사항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지식을 넓히면서 문제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 피해자는 언론이 다루는 이야기의 유형이나 게시되는 정보에 접근 가능한 사람, 그리고 정보의 형태(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등)를 알아야 합니다.
- 가능한 한 피해자가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면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터뷰를 서두르지 않고 침묵을 존중해야 합니다.
- 독자/시청자에게 어떻게 소개되고 싶은지 물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의 경험에 대해 무엇을 알았으면 합니까?”)
- 다음을 암시하는 질문은 피해야 합니다 - 피해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주장, 언론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주장
- 부정적인 가정이나 판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론은 심문관이 아닙니다.
- 가능하다면 기사 보도 전 피해자가 보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여러 정보를 조합하여 뉴스 독자가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보도 전에 확인해 보기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보도를 하게 될 때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 기사를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에라도 젠더 기반 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우리 사회의 인식 구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취재에 앞서 성범죄 보도 가이드라인을 한번 살펴보았다.
- 내 기사를 읽는 피해자의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았다.
- 이 보도의 관점과 표현이 사건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았다.
-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선입견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다.
- 젠더 기반 폭력 취재 전 젠더 데스크를 비롯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 젠더 기반 폭력 취재 후 심리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

3 보도 시에 확인하기 - 젠더 기반 폭력 보도 체크 리스트

CHECK LIST

피해자 보호	피해자의 신원과 관련되었거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는가?	
	사건과 관계없는 피해자의 과거에 대한 정보나, 피해자의 일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는가?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고자 하는 경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피해자의 진술을 이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는가?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불필요하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은가? 해당 피해 정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가?	
	피해자를 동정적 시선으로 보아 무력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상황에 한정하여 묘사하지 않았는가?	
디지털 성폭력 보도에서의 피해자 보호	불법 촬영물 유포와 관련하여 키워드, 사이트 명, 플랫폼 및 검색 건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조합하면 손쉽게 해당 영상을 찾아낼 수 있게 하지 않았는가?	
가해자 관련 정보 제공	가해자의 삶과 일상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가해자의 말을 사실 확인 및 비판적 점검 없이 그대로 전달하여 사실상 사회적 변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는가?	
2차 피해 방지	사건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을 수 있다는 수사 기관의 보도 자료, 혹은 관계자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고 있지 않은가?	
	사건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을 수 있다는 수사 기관의 보도 자료, 혹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였는가?	
	사건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을 수 있다는 수사 기관의 보도 자료, 혹은 관계자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했는가?	
	사건의 정황에 대한 설명에서 특정한 고정관념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2차 피해 방지	기사 댓글을 통한 2차 피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조직 차원의 조치를 고려해 보았는가?	
제목과 표현 어휘	제목에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성폭력 범죄 보도에서 주의해야 할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재판 중인 성희롱 성폭력 범죄 사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변호인이나 지인, 피해자의 변호인이나 지인 등의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경우 이를 보도할 만한 충분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가해자의 변호인이나 지인의 말을 보도하고자 할 경우 피해자 측에 사실 확인 및 반론에 대해 취재하였는가?	
가정 폭력 및 교제 폭력 관련 보도	사적 영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책임을 명확하게 묻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범죄가 유발했을 것이라 생각하도록 보도하지 않았는가?	
	폭력 양상을 상세하게 재현하는 표현을 쓰거나 영상 등 이미지를 포함하지 않았는가?	
	가정 폭력,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 가족 유형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가?	
	아동의 경우, 아동이 성장한 이후에도 트라우마를 자극할 만한 현장 영상 및 관련 이미지 자료를 포함하지 않았는가?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의 제목 명명	피해자의 이름이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표현을 기사 제목으로 쓰거나 사건 명명으로 사용하지 않는가?	
스토킹 및 메타버스 성희롱 등 신종 성범죄	신기술과 관련된 범죄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여 모방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았는가?	

12

UNESCO(2019). Reporting on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a handbook for journalists.

젠더 기반 폭력 보도에서 요구되는 것은 사건 그 자체를 상세하게 알리는 것보다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폭력에 대한 뉴스에서 기관 및 시민社会의 지원, 사회적 지원과 법제도적 변화 요구에 초점을 맞추면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 효과가 커진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¹² 위의 체크리스트는 사건 그 자체를 알리는데 초점을 둔 보도가 드러내기 쉬운 문제에 대한 점검을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미디어가 젠더 기반 폭력 보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

미디어는 폭력에 대한 보도를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폭력 보도는 선정적이 되기 쉬운 속성을 갖습니다. 폭력의 양상을 상세하게 전달하려고 할수록 피해자의 경험이 대중에게 소비되는 가벼운 소재가 될 수 있고, 모방을 유도할 수도 있으며, 특히 아동에게는 심리적 불안정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젠더 기반 폭력 보도에서는 위의 문제점에 몇 가지 문제가 더해집니다. 젠더 기반 폭력 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아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대중이 생각하는 범죄라는 점입니다. 둘째, 가정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법이나 외부 제도 등이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피해자, 즉 아동이 피해자이거나,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만 피해로 인정하는 인식이 법의 판결에서부터 대중 인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또한 가정 폭력 사안이나 아동 학대 사안에는 가능한 한 가정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가정은 회복되어야 할 영원한 안식처라는 인식이 있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젠더 기반 폭력 보도가 잘못된 관행을 반복한다면, 젠더 기반 폭력이 유지되는 고정관념과 구조적 차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통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가정 폭력이나 스토킹과 같은 사적 관계에서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젠더 기반 폭력 보도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하고, 이 문제가 사적 개인 간의 개입하지 않아야 할 자율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사회적 문제이자 피해자의 인권 침해 범죄임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1) 젠더 기반 폭력 보도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의 사항

- 피해자의 신원 노출 가능 정보 포함 등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하지 않은 보도 지양

CHECK LIST

피해자의 신원과 관련되었거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는가?

 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모자이크나 음성 변조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원 관련된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것은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보도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관련된 신원 보호 처

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간접적으로 누가 신원을 어디에서 노출했다는 것을 알려주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있습니다.

Q 사례

| 윤중천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그 동영상에 나온 여자는 가름하고 ***에 비하면 키도 작고'와 같이 설명
| 을 언급한 것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사례(2019.4.29.)

Q 사례

| 피해자의 이름을 SNS에 노출하였다는 것을 알려 해당 SNS를 검색하면 SNS에 접속하거나 관련 정보가 게시된
| 커뮤니티 게시물 등을 검색할 수 있어서 피해자의 실명을 볼 수 있도록 한 사례(2020.12.23. 다수 언론 보도)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신원이 쉽게 공유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보도 시에 유의해야 합니다. 완벽한 모자이크를 통해 신원을 보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인 노출은 최근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면 쉽게 실명을 찾아내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래의 피해자 신원 노출 가능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식으로 자료와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13

경향신문 성평등 보도 가이드라인

최근 디지털화된 뉴스 소비 환경에 따라 뉴스 내용이 오랜 기간 피해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¹³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 있는 정보들

- 피해자의 나이, 직업, 신분

피해자의 직업이 특수하거나, 소속 집단 내 성비가 기울어져 있을 경우 피해자의 노출이 쉽게 이루어진다. 특히 댓글 등에 피해자 정보가 공개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피해자의 거주지와 근무지

영상이나 사진이 함께 실릴 경우, 피해자가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장소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어렵지 않은 일이다.

- 범죄 발생 장소

지역을 알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피해자의 거주 공간이나 근무 공간과 지나치게 가까울 경우 다른 정보들과 조합하게 되면 혹 피해자 관련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특정한 경우(제자, 신도, 직장 상하 관계 등) 관련 정보와 조합하여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 주변인 인터뷰

동료의 언급이나, 관련된 지인들의 인터뷰가 실릴 때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

아진다. 주변인의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다. 언론은 재판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 직간접 정보의 조합 가능성 : 주변인 인터뷰와 거주지에 대한 정보가 합쳐지면 피해자가 특정 되는 등, 피해자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피해자 일상 정보 및 사적 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지양

CHECK LIST

사건과 관계없는 피해자의 과거에 대한 정보나, 피해자의 일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는가?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했다고 해도, 그의 직업이나 일상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으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해도 피해자 혹은 피해자 주변인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사적 질문을 하는 것 역시 피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피해자의 일상 관련 정보나, 과거 기록에 대항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만들어내는 문제도 포함됩니다.

아래의 사례에서 재판 중인 사건 보도를 하면서 피해자가 재판 시기에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알립니다. 이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며, 이후 피해자 비난으로 이어지는 다수의 관련 보도를 양산하였다라는 점에서 문제적입니다.

Q 사례

| 한 바다 낚시 사이트에 올라온 *** 근황(2018. 6.11)

| 강압적 노출 주장으로 유목을 끈 유튜버 ***양이 여름 휴가를 즐기는 사진이 커뮤니티에 게시되었다.

보통 이러한 정보는 피해자 비난을 위해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 즉 피해자다움의 고정관념은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일상을 영위하는 모습을 피해자가 진짜 피해를 입지 않은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사건의 해결이나 사회적 공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니며 피해자 비난만 가속화할 뿐입니다.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공개하거나, 피해자 비난이 가속될 때에는 이에 대한 반론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의 경우, 다수 언론이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온라인에 게시되었다는 것을 중계하거나, 성폭행 거부 등 성인지 관점이 부족한 표현을 사용해 보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제적 보도를 짚어주고 비판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전달하는 보도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Q 사례

| 인하대 피해자 ‘행실’이 왜 나오나…2차 가해 분노한 여성들(2022.7.19.)

|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언론이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했는지에 대한 점검

CHECK LIST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고자 하는 경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피해자의 진술을 이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는가?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고자 할 경우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였다면 2차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댓글 창을 열지 않는 것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언제나 동의하에 사용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환기하거나 가중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2차 피해가 가속화되는 것에는 소셜 미디어와 포털 서비스와 같은 온라인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신원을 노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온라인 뉴스 서비스 환경을 점검하여 악성 댓글과 모욕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포털 서비스의 경우 댓글 창을 제공하지 않거나, 해당 뉴스를 SNS를 통해 홍보하지 않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 사용에 대해서는 언제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동의하에 해당 진술의 표현과 내용을 점검하여 기사에 실어야 합니다. 혹 보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에게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도 필요합니다.

-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상세하게 노출하거나, 이후 피해가 지속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함

CHECK LIST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불필요하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은가? 해당 피해 정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가?

피해자를 동정적 시선으로 보아 무력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상황에 한정하여 묘사하지 않았는가?

 젠더 기반 폭력 범죄의 폭력 양상을 불필요하게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신체의 고통을 과도하게 묘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대중의 선정적 관심사에 부응하는 정보에 불과합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트라우마의 환기를 통한 고통을 다시 경험할 수 있으며, 아동 피해자의 경우라면 본인이 통제하지 못하는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성장한 이후까지 고통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동정적 시선을 유발하기 위한 보도는 피해자의 주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피해자를 무력한 위치로 한정하여 이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보도에서 선정성이 늘 문제시되었던 것은 피해 상황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하는 관행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미투 운동 보도 이후 줄어들었다고 평가되긴 합니다만, 혹시 피해상황의 묘사가 불필요하게 포함되는 경우 피해자와 주변인에게 피해를 환기시키고 충격을 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피해 상황의 묘사가 기사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2가지 이상 생각할 수 없다면 관련 묘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선정적 처리 역시 문제입니다. 아동학대 양상을 상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아동에게 충격을 주고 이후 트라우마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조두순 사건 보도에서 언론이 가장 크게 비판을 받은 점은 피해자의 신체 상황을 상세하게 알림으로써, 전 국민이 피해자가 영구적인 손상을 입은 것을 알게 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성인이 된 지금도 해당 정보는 남아 있어 언제나 자신의 피해 상황을 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Q 사례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피해자 밀었다’ (2022.8.16.)

가해자가 성폭행 시도를 한 시점부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녹음된 음성을 언급하고 어떤 소리가 있는지를 상세하게 묘사하여 유가족이 항의를 한 사례임.

해당 정보를 유족이 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디어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유족, 혹은 가족 및 관계자에게 처음 알리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적 기관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정보를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될 때 느끼는 심리적 충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14

최이숙, 김은진(2019). 누구의 목소리를 어떻게 전하였는가?: 인터뷰 기사를 통해 본 미투 운동 초기 TV 보도의 양상. <미디어, 젠더 & 문화>, 34(2), 147-189.

미투 운동에 대한 보도에서 지적을 받은 것 중 하나는 피해자를 바라봄에 있어서 생존자로 바라보지 않고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존재로만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젠더 기반 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¹⁴ 기사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표현하되, 피해자의 주체적인 모습 역시 조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상 보도라면 눈물이나 떨리는 손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화면 구성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2) 디지털 성폭력 보도에서의 주의사항

- 디지털 성폭력 범죄관련 검색 가능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CHECK LIST

불법 촬영물 유포와 관련하여 키워드, 사이트 명, 플랫폼 및 검색 건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조합하면 손쉽게 해당 영상을 찾아낼 수 있게 하지 않는가?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경우 특히 관련 영상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이후 해당 영상의 유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폭력 관련 보도에서 피해자 보호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보도에서 피해 영상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은 현재 시장이 형성되어 일반 사람들이 수익을 얻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가벼운 흥미 거리로 여겨 손쉽게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고 유포하는 문제도 나타납니다. 언론 보도에서 검색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와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피해자 이름만 가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가해자 명이나 유포자 명, 재판에 등장한 은어 등이 노출될 경우 해당 영상 검색이 가능합니다.

Q 사례

다크웹 취재를 한 어떤 주간지의 기사는 성폭력 범죄 보도 공감 기준을 준수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다크 웹에 불법 촬영물을 주로 유포하는 가해자 명을 검색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함으로써 해당 영상의 검색 유도를 하는 결과를 낳은 바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 가능한 수준이란 단 한글자만 포함되어도 가능합니다. 특히 비공개 채팅룸 등을 통해 유포되는 불법 촬영물의 경우, 해당 채팅방에 한글자만 질문한다고 해도 쉽게 검색어를 알아낼 수 있고 유포 링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 보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 이 범죄는 중대 범죄이다.
- 이 범죄는 직간접적으로 피해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특성으로 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게 한다.
- '성관계 영상'이라는 인식 속에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피해자의 고충이 강화된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는 사이버 범죄 수사대의 수사 범위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 신종 성폭력 범죄입니다. 디지털 성폭력은 언어적 성적 괴롭힘에서부터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 그리고 성착취를 통한 촬영 강요, 인신 구속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유형과 범주로 일어납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 보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범죄가 중대 범죄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련의 사법 판결에서 드러나는 것은 물리적 폭력이 있는 성폭력 범죄에 비해, 촬영과 같은 비물질적 수단을 활용하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형식적으로라도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피해자 비난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법 촬영을 강요받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성행위 영상을 촬영했다는 것 자체로 피해자 비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를 담은 불법 촬영물이 디지털 환경에서 유포, 확산되는 것을 제어하기 어려우며 영구 삭제 역시 쉽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회 구조 때문에 더욱 확산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폭력 관련 보도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신종 성범죄에서 범죄 수법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보도

CHECK LIST

신기술과 관련된 범죄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여 모방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았는가?

 **신종 성범죄, 스토킹 범죄와 같은 경우 범죄 수법을 상세하게 알릴 경우 모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범죄 수법이나 양상을 부각하지 않으면서 사건을 서술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신종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등의 문제가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범죄 수법의 상세한 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시사 프로그램은 온라인 그루밍 상황을 재연해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재연 과정이 지나치게 상세하여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야 대응할 수 있다’라는 관점과 ‘이러한 방식으로 아동을 유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관점이 충돌한 것입니다. 양가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언론은 모방 범죄가 가능할 정도로 범죄 양상을 상세하게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을 통해 유포되는 확산의 힘을 생각하면, 부적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양상의 경우는 더욱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신당역에서 일어난 스토킹 범죄 보도에 대한 우려는 범죄자의 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해당 정보가 시민이 알아야 할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의 본질은 직장 내 스토킹 문제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제도적 조치가 없는 가운데 살인 사건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Q 사례

| 신당역 여 역무원 살해 30대…‘흉기 들고, 샤워캡 쓰고’ 1시간 기다렸다(2022.09.15.)

3) 젠더 기반 폭력 보도에서의 2차 피해 방지

-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가해자의 사생활을 전달하거나, 가해자의 심경을 전달하거나 가해자의 업적을 중심으로 하는 보도를 하는 등, 가해자 입장에서 공감을 유도하는 보도 지양

CHECK LIST

가해자의 삶과 일상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가해자의 심경, 업적 등은 사건의 본질과 관계가 없어 굳이 보도할 가치가 없습니다.

15

Waterhouse-Watson, D. (2013). Athletes, Sexual Assault and 'Trials by Media': Narrative Immunity. New York: Routledge

가해자가 유명인인 경우, 명성 때문에 언론이 주목하게 되는데 이 자체로도 성폭력 책임에 대한 서사적 면책(narrative immunity)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¹⁵ 종종 성폭력 범죄가 아니라 성 행동으로 이해되며, 이렇기 때문에 피해자 비난이 가속화되는데 가해자의 입장은 계속 알려주게 되면 이에 따라 가해자의 면책에 대한 인식이 수용자들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유망한 청년(promising young man)은 2015년 미국의 캠퍼스 내 성 폭행 범죄자 브룩 터너(Brock Turner)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판사가 터너가 전도유망한 청년이라는 이유로 감형한 것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가해자가 뛰어나거나 업적이 있거나 혹은 청년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것은, 성폭력 범죄가 사소한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합니다. 종종 우리 언론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자의 일상이나 주변 반응을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 그럴 사람이 아니라거나 혹은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등의 말이 불필요하게 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는 단순히 언론의 조회수만 확보해주는 데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이후 재판에 영향을 주곤 합니다. 위의 미국 판사의 사례가 낫설지 않은 것은 우리 언론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주빈은 학보사 편집장이었고, 조용한 성격의 평범한 대학생이라는 점을 보도한 사례를 예로 들어 생각해 보면, 해당 정보가 사건의 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불필요한 정보 제공이 가해 행위의 정당화와 이에 따른 피해자 비난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가해자의 업적을 보도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2차 피해 방지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사례

| 전교 부회장 출신 공범 '부따'…조주빈 주말에도 소환(2020.4.25.)

만약 이 내용을 보도하게 되었다면 공범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를 포함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조주

빈 공범으로 지시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언론사가 가해자에 대한 부가 정보 없이 조주빈 공범, 혹은 N번방 공범 등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 성희롱, 성폭력 사건, 스토킹, 디지털 성폭력 사건 등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사소하거나,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그렇게까지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보도 지양

CHECK LIST

가해자의 말을 사실 확인 및 비판적 점검 없이 그대로 전달하여 사실상 사회적 변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는가?



가해자와 가해자 주변인의 말을 비판적 점검 없이 그대로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폭력 범죄는 로맨스와 관련되어 묘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 보도 및 관련 재판 보도에서 가해자가 ‘이렇게 사소한 행위가 폭력 이라니 말이 안 된다’, ‘피해자가 당시에는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호감이 있는 관계였다’라는 식의 주장을 해왔고 이를 반복적으로 보도해왔습니다. 가해자는 스스로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보수적 성의식에 호소하려 하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 일상적 행동이거나 호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성 행동이라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 주장을 전달하는 것을 일종의 객관주의적 의무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단지 가해자의 ‘말’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객관적 진술로 여겨지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이를 언론이 특별한 비판적 시선 없이 그대로 전달하기만 한다면,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 사례

| 입맞춘 뒤 "추워보여서 그랬다"... 미대 교수 성추행(2018.02.23.)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한 사건임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가해자들의 말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인식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제목을 통해 강조하거나, 직접 인용하여 성폭력 범죄 보도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강화하면 안 됩니다.

- 해당 사건이 일어난 데에 피해자의 책임이 있다는 기해자의 말이나 수사 기관의 표현을 팩트체크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보도 지양

CHECK LIST

사건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을 수 있다는 수사 기관의 보도 자료, 혹은 관계자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고 있지 않은가?

사건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을 수 있다는 수사 기관의 보도 자료, 혹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였는가?

사건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을 수 있다는 수사 기관의 보도 자료, 혹은 관계자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했는가?



젠더 기반 폭력 문제가 피해자의 책임이라는 전제 혹은 합의가 담긴 말을 부각하여 보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종종 수사 기관은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가해자의 관점에서 기술하려고 합니다. 이는 수사 기관에서 취조를 통해 알아낸 사실이라고 여겨지지만, 사실 가해자의 입장에서 재구성된 사건입니다. 이를 수사 기관이 무분별하게 브리핑하거나 보도 자료로 배포한다면, 언론은 이러한 가해자 입장의 말을 그대로 옮기게 되어,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회적 인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종종 가해자의 입장에 몰입할 수 있는 형용사를 사용한다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Q 사례

2019년 8월 17일자 뉴스

여자친구가 매정하게 딱 이제 안 만난다고 자르니까 거기서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확 나서 납치했다고 말했습니다.(수사기관 담당자의 말)

언론은 이 내용을 가감 없이 전달했습니다. ‘매정하게’,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나서’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가 매정하다는 설명으로 피해자가 문제가 있다고 하고, 가해자의 납치 행위는 이성을 잃은 행위로 우발적인 행위라는 방식으로 이미 피해자의 책임과 가해자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사 기관의 말을 그대로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납치했다’는 정도의 요약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종종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팩트체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 방식은 가해자의 이유만 전달하기에,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피해자 다음의 인식 구조를 강화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정황에서 피해자 비난을 포함하는 고정관념 요소가 들어간 보도 지양

CHECK LIST

사건의 정황에 대한 설명에서 특정한 고정관념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종종 성폭력 범죄 보도에는 ‘술 취한 채’라는 말이 강조되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늦은 귀갓길, 낮선 장소 등이 강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 범죄의 정황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여성이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입니다.

Q 사례

| ‘술 취한 여성을…’ 프로야구 선수 2명 성폭행 혐의 입건(2018.05.23.)

아래의 경우는 가해자의 말을 그대로 제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인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고무신 거꾸로 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과 연애에서의 결별은 개인적인 일이고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 경우 비난받아야 할 결별인 것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범죄는 처벌받아야 할 범죄로 비동의 유포죄에 해당합니다. 관련 사안을 보도한다면, ‘고무신’등을 사용하지 않고, 군 생활관서 비동의 유포 등으로 표현하여 범죄의 성격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Q 사례

| “고무신 거꾸로 신었지” 당해봐…군 생활관서 성관계 영상 유포(2022. 9. 12)

- 기사 댓글에서 무분별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민을 하는 보도의 필요성

CHECK LIST

기사 댓글을 통한 2차 피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조직 차원의 조치를 고려해 보았는가?

포털 서비스를 통한 뉴스 소비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언론사가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기사 댓글에서

피해자 비난이 가속화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1029 참사 보도에서도 상당수의 언론이 “※이태원 참사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이 기사의 댓글 창을 닫습니다.” 와 같은 고지를 통해 댓글 창을 닫았습니다. 다음 키카오는 포털 자체 결정으로 관련 뉴스의 댓글 창을 닫기도 했습니다. 댓글이 민주주의의 도구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젠더 기반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 이상적 피해자 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일단 관련 댓글을 막음으로써 수정할 수 있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취재 시 언론사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언론사에 따라 전체 젠더 기반 폭력 보도에서 댓글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언론사가 이러한 정책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별 기사에 대한 댓글 허용 여부는 취재원의 의사에 따라 언론사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취재 시에 알릴 수 있습니다. 언론사 조직 내부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는데 취재 기자가 이에 대한 설득을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4) 젠더 기반 폭력 보도에서 제목 작성 및 표현의 주의 사항

- 기사 제목에서 선정적 요소(피해 정황, 범행의 구체적 내용)를 통해 관심을 유도하려는 보도, 혹은 가해자 및 피해자 주변인의 말을 부각하여 클릭을 유도하려는 보도 지양

CHECK LIST

제목에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  젠더 기반 폭력 보도에서 기사 제목을 통해 피해 양상을 부각하거나, 가해자 및 피해자 주변인의 말을 부각하여 보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털 뉴스 서비스 중심의 뉴스 수용 환경에서, 기사 제목은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 팸플릿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젠더 기반 폭력 보도에서 제목에 폭력 피해 양상을 자극적으로 부각하여 클릭을 유도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는 사건의 해결에 대한 관심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나 피해자의 잘잘못에 대한 품평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Q 사례

| 설마을 주민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응호? "여자가 꼬리치면 안 넘어갈 남자 있느냐?"(2018.1.19)

이 사례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가 아닌 가해자 주변인의 반응을 제목으로 강조하여, 성폭력 문제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진 시민들에게는 본인들이 통상 가지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공명하기에 클릭하게 만들고, 성폭력 범죄 보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시민들은 기사 내용에 항의하기 위해 클릭하게 만드는 기사입니다.

Q 사례

| ***부인***, "***거짓 불륜이었다" 피끓는 심정으로(2019.02.14.)

이 사례는 당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2심 판결이 가해자에게 유죄로 결정된 이후 가해자의 가족 측이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 올린 SNS 게시물을 주장을 따옴표로 강조하여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표현을 점검 없이 제목에 강조하였습니다.

- 기사 제목에서 성차별적 표현을 쓰는 것을 지양

CHECK LIST

성폭력 범죄 보도에서 주의해야 할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기사 제목 및 사건 명명에서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범죄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Q 사례

• N번방

→ 디지털 성착취 사건 (이유: 해당 명명이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지 못함)

• 몰카, 성관계영상

→ 불법 촬영물(이유: 몰카나 성관계 영상이라는 명명은 불법 촬영물들이 2010년대 중반까지도 웹하드와 해외 포르노 그리피 사이트 등에 업로드되어 유포될 때 주로 사용했던 표현으로, 해당 영상을 이 갖는 범죄적 성격이 사회적으로 인식되기 전의 용어입니다)

• 간음

→ 강간, 성폭행 (이유: 간음은 법적 용어이긴 하지만 범죄로서의 성폭력과는 다른 용어입니다. 부부관계가 아닌 사람간의 성관계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국어사전은 설명하지만, 아래 사례의 사건은 명백히 범죄 사건으로 단순히 '성관계'라고만 치칭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원래 N번방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N번방이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위해 명명한 명칭이라는 점과, 디지털 성착취 피해의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MBC는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으로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N번방이 자주 쓰이긴 하지만,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 범죄의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으로 사건을 명명하고 제목에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몰카'라는 용어가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몰카'라는 말이 제목에 쓰이기도 합니다. 또한, 범죄의 성격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어휘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앞서 인용한 사례에서, '성관계 영상 유포'는 사건의 정확한 요약이 아닙니다.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라고 해야 합니다. 비동의 유포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한 것을 말하는데 현재 가부장제 사회의 맥락에서는 여성의 신체 이미지와 신상이 대중에게 유포될 경우 강력한 비난에 노출됩니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비난이 가혹해진다는 점에서 정숙한 여성이라는 가부장제적 여성상에 어긋나는 여성에 대한 처벌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채로 유포가 되는 것은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가 됩니다.

또한, 다음 사례에서는 강간이나 성폭행이 아닌 간음을 써서 범죄의 성격이 없는 사건처럼 다루고 있으며,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을 면했다'는 표현을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Q 사례

| “고무신 거꾸로 신었지” 당해봐…군 생활관서 성관계 영상 유포(2022. 9. 12)

Q 사례

| 술 취한 여성 따라가 간음한 40대 징역 3년6월…가중처벌은 면해(2020.11.17.)

사건 명명에서의 주의할 점

CHECK LIST

피해자의 이름이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표현을 기사 제목으로 쓰거나 사건 명명으로 사용하지 않는가?



사건의 명명에 피해자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명이어도 이 원칙을 준수합니다.

'나영이 사건', '정인이 사건' 등 비록 가명일지라도 피해자명을 중심으로 사건 명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것인지 가해자인지도 모호해지고, 사건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지현 검사의 미투 보도는 최초 보도 시 ‘여검사 성추행 사건’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여검사가 성추행을 한 것인지 여검사가 성추행을 당한 것인지 한글 제목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국어의 조어 방식을 생각한다면 앞의 ‘지명’이 주어로 생각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가해자를 가리면 주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이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영이 사건에서는 일찍이 2009년 가해자 명을 따서 조두순 사건으로 명명했는데, 이후 이러한 원칙이 일관되게 지켜지지 못했습니다.¹⁶

사건의 명명은 사건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피해자 이름 대신 가해자 이름을 활용하는 명명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혹 가해자 명이 드러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안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인이 사건’은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지역 명을 표기한 것은 다수의 사건에서 해당 사건을 분리하기 위한 지표로 지역을 사용한 것입니다. 지역 낙인 문제에 대한 고민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과 본질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명명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재판 중인 사건 보도에서의 주의 사항

젠더 기반 폭력 보도에서 해외의 다수 가이드라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맥락적으로 충분하게 고찰하여 보도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는 사건의 발생-재판- 그 이후 해당 사건을 복기시키는 파생 사건까지도 언론이 충실히 후속 보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다는 윤리적 차원이 있는 한편으로, 성폭력 범죄 보도의 목적이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폭력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성범죄 사건의 트라우마는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이 종료된 후에도 발생하는 여타 파생 사건(예를 들면 가해자 출소)을 접하면서 공중이 함께 무엇에 공감하고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환기시키는 것이 언론의 목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성인지적인 재판보도는 성폭력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언론이 사법 판결문 전수 분석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과 판결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무척 긍정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사례

| 죽을 만한 일은 없었다 [페미사이드 500건 분석] (2021.12.19.)

| 2016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427건의 사건, 3500쪽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젠더 기반 폭력 범죄 보도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보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재판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말을 진실 공방의 틀에 두고 재판 중에 가해자 혹은 피해자 변호인에 의해 유출되는 말을 기사회하는 보도 지양

CHECK LIST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변호인이나 지인, 피해자의 변호인이나 지인 등의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경우 이를 보도할 만한 충분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재판 중인 사건에서 재판 내용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서 재판 내용에 대해 보도하고자 한다면, 사실 확인 및 반론의 기회를 확보하여 보도하여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 변호사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여론을 환기하고, 죄를 덮고자 하여 재판 중 등장한 가해자 지인들의 증언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이를 언론이 사실 확인이나 별도의 비판적 점검 없이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관행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수차례 지적되고 비판되어 온 바와 같이, 경찰과 법원, 검사 및 변호사 등 관계자가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관련 사건을 대하고 있다고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판 중인 사건에서 재판 내용에 대해 훌러나오는 말에 보도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언론은 가해자의 양형을 덜거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재판 전략을 널리 시민에게 알리고, 사회적 변론을 대신 해주는 역할을하게 될 뿐입니다. 만약 재판 내용에 대해서 보도하고자 한다면, 해당 보도에는 반드시 사실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판 중인 의 성격은 일정 정도 개인의 감정적 표현이나, 주관적 사실 표현이 들어갈 수 있으며, 변호 전략에 따라 의도적인 허위 사실을 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측의 진술이나, 관련 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주변인의 진술 등 가능한 한 폭넓은 사실 확인 과정 및 반론 기회를 확보한 다음에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사례

| “부부 함께 자는데 *** 들어와” *** 부인 ‘폭로’ 준비(2018.7.12.)

위의 사례는 재판 중 증인이 할 예정인 말을 미리 알린 경우입니다. 재판 중 한 말도 아니고, 재판 전에 이미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형성한 다음, 재판 내 증언을 다시 보도하게 하여 재판 내 증언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반전”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반전이란 기존의 사실이 뒤집혔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강조하는 가해자 측의 변호 전략에 부응한 사례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피해자 측의 반론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후 재판 중 발언 보도에서도 피해자 반론을 포함하여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 반론만 따로 보도하게 되면, 주목도가 다른 포털 서비스 환경에서 피해자의 반론이 전달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모든 뉴스를 모든 수용자가 보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전달하게 됩니다. 심지어 피해자 반론을 보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더욱 문제가 됩니다.

재판 결과를 가해자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보도 지양

CHECK LIST

가해자의 변호인이나 지인의 말을 보도하고자 할 경우 피해자 측에 사실 확인 및 반론에 대해 취재하였는가?

재판 결과를 보도할 때 우리 언론은 종종 양형에 집중하여 보도하고, 해당 양형이 감형되면 감형 이유를 강조하여 설명합니다. 해당 결과가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이 되고, 또 사회적 정의를 위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드러내기보다는,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에 집중하면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감형되거나 면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가 사실상 사소하다고 여기거나, ‘유망한 젊은 청년’이라는 관점 혹은 ‘유력 남성 인사’의 관점으로 해당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Q 사례

| “외로워서” 女화장실에 ‘몰카’ 설치 공무원…2심서 ‘감형’(2021.2.10.)

위의 사례는 문제적 기사 제목의 종합 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앞에 한자 너를 사용한 것, 범죄 이유를 가해자 입장에서 설명한 것 등이 문제적이며, 몰카 용어도 비판적 인식 없이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감형을 강조하여 전반적으로 가해자 입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Q 사례

| 대전 모 구청 여자화장실 ‘몰카’ 전 공무원 항소심서 실형 면해 (2021.2.10.)

위의 사례에서도 실형을 면했다는 표현으로 공무원의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사건을 보도한다면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청 화장실 불법 촬영 공무원 항소심에서 감형”되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기사에서는 감형 사유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거나, 인터뷰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더욱 가해자의 말이 중심 보도 자원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론할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한 측의 의견을 진실화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6) 가정 폭력, 교제 폭력 및 아동 관련 사건 보도

- 사적 영역에서 일어난 폭력을 보도할 때 사소한 것으로 만들거나 문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보도 지양

CHECK LIST

가정 폭력과 교제 폭력,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 등을 보도할 때 사적 영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책임을 명확하게 묻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범죄가 유발했을 것이라 생각하도록 보도하지 않았는가?

 가정 폭력 및 교제 폭력, 아동에 대한 학대는 모두 사회구조적 문제이고 사적 영역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 폭력, 교제 폭력, 아동에 대한 학대는 젠더 기반 폭력의 유형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젠더 기반 폭력은 역사적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반영하는 폭력을 의미하며,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폭력 유형으로 여겨지지 않거나 피해자와 사적 화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거나, 친밀한 사이(교제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아동에 대한 학대 역시 젠더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

과 아동에 대한 학대가 동시에 발생으로 나타나기 때문만이 아니라, 대부분 제 구조 하에서 남성 가장의 위기 상황, 여성의 학대로 인한 우울 등이 영향을 복합적으로 미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가이드라인에서 아동 학대 관련 보도에 대한 전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사소화하는 문제 혹은 아동보호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문제에 한하여 다룹니다.¹⁷⁾

17) 아동학대 보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2022)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num=20>

어휘와 관련된 부분을 점검하여 보면, 데이트폭력 대신 교제폭력을 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미 차이가 없어 보이는 대체 표현이지만, 데이트가 우리 사회에서 사용될 때 보다 낭만적으로 이해되는 경향 때문에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데이트 폭력 논란'이라면서 일어난 장소를 지정하여 보도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지역이 중요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최근 감시 사회의 맥락 속에서 CCTV 등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 정보를 부각한 것입니다. 지역 정보를 부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를 '논란'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적 영역의 일어서 양측 말을 모두 들어보아야 하며 실제 중대한 폭력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전제를 두는 표현입니다.

Q 사례

| 또 '데이트 폭력' 논란…이번엔 부산 지하상가(2020.11.12.)

교제폭력에 대한 기사에서 문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해당 사건이 연인 사이라는 점에 기반을 둔 취재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연인 사이였는데 미안하지 않냐고 물어보는 것은 살인 사건에 적절한 질문이 아니며, 연인이었다는 점이 살인의 이유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제폭력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잘못된 인식, 공포와 위협을 통해 타인을 지배하려는 폭력적인 양상들이 ‘연인 관계’로 포장되어 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범죄의 본질을 가리는 질문을 언론이 던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사례

“죄송하다”…‘데이트폭력 신변보호’ 여성 살해 30대 남성 서울 압송(2021.11.20.)

이날 오후 4시55분쯤 서울 중부경찰서에 도착한 B씨(35)는 “살인 등 혐의를 인정하나”, “왜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나”, “접근금지 상태였는데 왜 접근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연인관계였는데 미안한 감정은 없나”라는 질문에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답했다.

폭력의 현장과 양상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제시하는 보도(CCTV 영상 보도) 지양

CHECK LIST

폭력 양상을 상세하게 재현하는 표현을 쓰거나 영상 등 이미지를 포함하지 않는가?



가정 폭력 및 교제 폭력, 아동에 대한 학대 범죄에서 CCTV 영상을 특별한 맥락 없이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상황 묘사 역시 피해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하여 선정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정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가정 폭력 사건 등에서 정상 가족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할 경우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교제 폭력 보도는 CCTV 보도였습니다. CCTV를 통해 피해 장면이 여과 없이 자세하게 노출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디지털 환경에 영속적으로 남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언론은 폭력의 가장 잔인한 부분을 확대하거나 반복하거나 혹은 동그라미를 치는 등으로 강조하여 보도하여 왔습니다. 폭력 양상을 상세하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문제 해결 방안이 중요하며 특히 미비한 법제도에 대한 여론 환기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Q 사례

| ‘부산데이터 폭력 사건의 전말은?…“기절한 여성에 사커킥”(2020.11.20.)

위의 제목에서 사커킥과 같은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행위를 종합격투기라는 스포츠 기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스포츠 기술을 모든 대중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은유의 기능도 하지 못할뿐더러, 폭력 행위를 상세하게 전달하면서 사건의 선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CHECK LIST

아동의 경우, 아동이 성장한 이후에도 트라우마를 자극할만한 현장 영상 및 관련 이미지 자료를 포함하지 않았는가?

 가정 폭력 및 아동 폭력 학대 피해자의 경우, 학대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온라인 뉴스 소비 환경은 지난 2-3년 사이에도 급격하게 변화하였습니다. 포털 서비스의 뉴스 제공 원칙도 계속 달라지고 있고, 사람들의 뉴스를 보는 방식도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수익이라는 차원에서 주목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한 고려는 이렇게 주로 주목 경제의 문제로 논의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언론에서 더 고려해야 하는 점은 “디지털 미디어가 갖는 영속적 속성”입니다. ‘잊힐 권리’를 요구하는 이유는 한번 디지털 공간에 업로드된 정보는 정보 제공자가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곳에 다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유튜브가 뉴스 소비 주요 창구가 되면서, 언론의 보도 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개인 채널 영상 내에 삽입되는 경우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삭제한다고 해서 책임을 완전하게 면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닌 것입니다.

아동이 사건의 피해자 혹은加害자일 때 언론은 종종 CCTV 등 각종 영상 자료를 첨부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아동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동권리보장 원이 제작한 아동학대 보도 권고 기준에서는 ‘학대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노출하거나 자극적인 재연 금지’를 제시합니다. 일상적 활동을 담은 CCTV는 괜찮지 않은가 하는 반문도 있으나, 이 경우라면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아동인권 침해’를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미디어가 보도한 것은 단발성 보도로 휘발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정보는 어느 곳에 저장되어 있는지 조차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쉽게 유포되고 확산됩니다. 피해자 아동은 자신이 성장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될 때까지도 자신의 피해 장면이 담긴 영상과 이미지가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다는 문제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아의 경우 입양 등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일과 단절되어 자라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자신의 과거 이미지를 만날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아동학대 범죄에서 피해자의 피해 장면이 담긴 관련 영상과 이미지는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학대 피해자의 일상과 같이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정보를 보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하는 것으로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 일반에 해당하는 원칙이지만 특별히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기사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관련 영상을 제공하고 있고, 제목에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묘사합니다. 특히 이 영상은 편의점 도난방지를 위한 영상을 공개한 것인데 기사에서는 아동이 학대를 받아 체중이 적다고 외모를 묘사하기 위해 관련 영상을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사건 내용에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사례

| 아이 울자 엄마는 던지고, 외할아버지는 욕하고 때리……‘충격’[영상](2022.09.01.)

| 천안 계모 사건 이어 ‘창녕 아동학대’ 네티즌 ‘분노’…“계부가 손에 심한 화상 입혀”(2020.6.8.)

아동 학대 사건에서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의 사용 금지

CHECK LIST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족 유형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가?

아동학대 보도 가이드라인은 새아버지, 계모 등 아동학대가 소위 정상가족의 범위를 벗어난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적인 표현으로 사건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사례와 같이, 악마 새아빠와 같은 형식으로 입양 가정 혹은 재혼 가정에서 가정 폭력이 일어난다는 편견에 조응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음 사례와 같이 불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보들은 종종 가해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지만 실제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정보는 아니며, 아동 학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구조적 노력에 대한 강조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Q 사례

| 말다하다 살해·12년간 성폭행……法. '악마 새아빠'들에 중형 선고(2022.04.20.)

| 영하 날씨에 딸 버리고 남자와 모텔 간 엄마……징역 1년(2022.05.12)

4 보도 후에 확인하기

1) 피해자 지원 정보를 포함하기

프랑스 프르농 라 원이 제시한 성폭력 범죄 보도 가이드라인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자 상담 번호를 포함해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는 사람들 중에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로 공동의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소셜 미디어와 포털 서비스 댓글란을 통한 2차 피해가 가중되는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역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댓글란을 제공하지 않는 조직 차원의 대응도 가능하지만, 댓글란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례와 같이 댓글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을 안내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제안 - 피해자 지원 정보

※ 성폭력·성희롱은 일부 개인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구조적 성차별 범죄입니다. 성폭력·성희롱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번호 + 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상담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제안 - 2차 피해 방지

※ 성폭력·성희롱은 일부 개인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구조적 성차별 범죄입니다. 뉴스 댓글란을 이용해서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모욕 및 비하 정보를 게시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법이 정의한 2차 피해 유발에 해당합니다.

2) 후속 보도하기

구조적 폭력으로 젠더 기반 폭력 문제를 다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러한 폭력 행위의 장기적인 영향을 설명하고 문제를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후속 기사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속 보도는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정의의 추구 및 유사한 경험을 한 다른 피해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성학대 사건 등은 가능한 한 후속 보도를 하면서 아동 청소년의 트라우마를 강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되기도 합니다. 만약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면 이는 사건의 단순 재현이 아닌 사건에 대한 향후 대책과 공동체 변화를 추구하는 정보를 보도하기 위한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후속 보도가 가능한 의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 가해자에 대한 처벌 결과
- 새로운 정책 또는 입법
- 새로운 연구나 새롭게 발견된 현상
- 정부 및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역량강화 캠페인

18

CENTER FOR WOMEN'S GLOBAL LEADERSHIP(2022). Silence and Omissions: A Media Guide for Covering Gender-Based Violence. <https://gbvjournalism.org/book/lessons-learned-from-gender-based-violence-reporting>

19

<https://www.postandcourier.com/app/till-death/partone.html>

더 읽을거리

: **후속 보도에 대한 고민을 담은 유니스 킬론조의 다음 에세이(에세이 내용 요약)¹⁸**

Jackline Mwende는 남편에 의해 손이 잘리고 귀의 청력을 잃었으며 치아의 일부 역시 잃었다. 이에 대해 취재한 다음, 정부나 다양한 기부자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묻는 연락을 받았다. 케냐에서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촉발되었다. 하지만 관련 논쟁에서 일부 사람들은 이를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부르는데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후속 기사를 작성하면서 고민한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다. 의 수에 대한 경제적 지원, 새집, 생계를 위한 사업 지원 등이 주제가 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기자는 피해자를 낙인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최선의 이익을 줄 수 있는 보도가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했다.

: **풀리처 상 수상 가정 폭력 보도와 후속 보도 사례¹⁹**

Jackline Mwende는 남편에 의해 손이 잘리고 귀의 청력을

잃었으며 치아의 일부 역시 잃었다. 이에 대해 취재한 다음, 정부나 다양한 기부자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묻는 연락을 받았다. 케냐에서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촉발되었다. 하지만 관련 논쟁에서 일부 사람들은 이를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부르는데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후속 기사를 작성하면서 고민한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다. 의 수에 대한 경제적 지원, 새집, 생계를 위한 사업 지원 등이 주제가 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기자는 피해자를 낙인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최선의 이익을 줄 수 있는 보도가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했다.

20

<https://www.pulitzer.org/winners/anchorage-daily-news-contributions-propublica>

21

<https://features.propublica.org/alaska-sexual-assault/unheard-survivor-stories/?source=adn>

: 풀리처상 수상 알래스카 사법 부재 현실과 대안에 대한 보도²⁰

2019년 Anchorage Daily News는 ProPublica와 협업하여, 알래스카 지역의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 기반 폭력 문제 및 자살 문제 등, 총체적 사법 부재 문제를 1년여간 취재하여, 현실과 대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보도(Lawless 시리즈)를 하였고 2020년 풀리처상 공공보도 부문에서 수상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장기 취재 결과물로 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공공 기록물을 조사하면서, 해당 문제가 선주민에 대한 차별과 관련되어 있는 점, 사법 체계의 부재가 미국 정부의 무관심 속에 오랜 기간 방치된 결과물이라는 점 등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2019년 시작된 알래스카 지역의 성폭력 사건 취재를 2020년까지 연이어 사례 수집을 하였고, “Unheard” 프로젝트를 통해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²¹ 이 프로젝트가 주목할 만한 것은 생존자를 주체적인 의지를 갖고 피해를 고발하고 이를 극복한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으며, 사진 자료의 사용 등에서 현재 생활에 집중하면서 과거의 폭력 경험에 매인 불쌍한 사람들로 묘사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04

이미지 활용 가이드라인

최근 이미지는 종이신문 기사보다 포털 뉴스 기사에 더 많이 등장합니다. 이미지의 활용은 포털 서비스 매개 뉴스 소비가 일상화되었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보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섬네일의 형태로 이미지가 없으면 뉴스 클릭에 대한 호기심을 끌기 어려운 상황에서 만들어진 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미지를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여성, 남성에 대한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담아 활용되는 이미지

여성과 남성의 특정 성별만 부각하여 이미지를 활용할 때,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반영되거나, 여성의 경우 성적 대상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갑질과 관련된 다음 기사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갑질하는 상사의 이미지를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을 묘사하는 이미지에서는 남성 직장인을 대표로 묘사합니다. 이는 여성이 화가 많고 히스테리컬하다는 고정관념, 직장인 즉 공적 영역의 대표자는 여전히 남성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너는 얼굴 생긴 게 임팩트가
없다”고 면박 준 직장상사
(2019.6.17.)



—
코로나 사태로 야기된
근무환경 변화…서서히
공론화되는 ‘주4일
근무제’(2021.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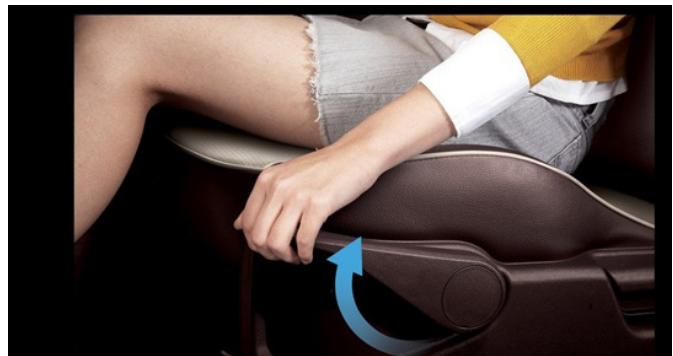
고정관념에 의해 작성된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이미지를 구성합니다.
- 남성적 영역으로 여겨지는 부분(경제, 정치 영역 등)에서 남성 이미지만, 여성적 영역(소비, 문화 영역 등)에서는 여성 이미지만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여성의 히스테리, 예민함, 모성 등의 특성과 관련하여 이미지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남성을 강인함, 폭력 등과 같은 특성과 관련하여 이미지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2 성적 대상화 이미지

성적 대상화는 인간을 성적 욕망을 위한 도구로만 취급하면서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통상 신체의 일부로 인간을 환원하는 방식을 통해 나타납니다. 아래의 사진이 대표적인 대상화된 사진인데, 자동차의 여성 고객을 설명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 일부만을 부각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있는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을 필요도, 또 차의 성능을 부각하기 위해 좌석이 선택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심을 알아주는 기아차라는 제목에 맞추어 아래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있습니다.

女心을 알아주는
기아차, “여성고객 비중
30%”(2010.08.26.)



아래 사진은 불법 촬영에 대한 이미지로, 불필요하게 범죄 현장을 재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외에도 여성 이미지를 제시하는 방식에서 문제입니다 인간의 신체를 일부 특히 얼굴을 제외한 채 제시하는 것은 성적 대상화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또한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옷차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몰카로 거둔 이익 몰수하고
가중처벌한다(2018.7.5.)



3

젠더 기반 폭력 보도에서의 이미지 문제

1)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이미지

① 피해자는 피해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약한 존재이다

② 가해자는 악마 같고 비인간적인 존재이다.

아래의 세 가지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는 고개를 수그리고 위축되고 나약한 자세를 취하며, 종종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가해자의 손은 피해자를 향해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종종 가해자는 검은색으로 그려지면서, 비인간적 모습으로 강조됩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분명하고, 가해자는 나쁜 사람이므로 이러한 이미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다는 생각은 성차별적 생각입니다. 피해의 트라우마는 당연히 피해자의 일생에 남을 것이지만 그것은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며,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은 성적 순결을 중시하는 가부장제 관념에 따른 인식이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특별하게 악마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악마이고 비정상인이나 이 사람만 사회에서 분리하면 된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지만, 젠더 기반 폭력 범죄는 구조적 문제이고 권력 관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
친족 성폭력 매년
증가하는데…구속률은
17.8% 불과
(2022.10.2.)



—
베일 벗는 포스코의
연쇄 성폭력 사태
…누가 뭉갰나
(2022.6.23.)



—
“아이가 먼저 유혹”…
성폭력 피해 아동,
법정에서 직접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2021.12.15.)



2) 사건의 내용을 불필요하게 재연하는 이미지

아래의 사례는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불법 촬영 양상을 재연한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범죄 사건의 경우 모방 범죄를 우려해서라도 상세한 재연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는 여성의 신체가 부각되는 방식으로 그려진 점에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복장은 일상 복장이며, **피해가 생긴 것은 가해자의 잘못된 행위 때문입니다.**

—
여성 몰카범
잡고보니…‘앵커상’도
받은 지상파 뉴스
진행자(2019.7.8.)



—
지하철서 불법 촬영한
남성 현행범 체포…
폰에선 다른 여성 몰카도
나와(2021.8.23.)



아래의 사진 역시 부적절합니다. 해당 사안은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버스에서 불법 촬영한 가해자에게 2심 판결에서 무죄평결을 내린 후,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기사입니다. 해당 기사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 이미지를 등장시킬 필요가 없으며, 해당 이미지는 여성 얼굴을 삭제한 채로 제시된 전형적인 성적 대상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
레깅스 여성 몰카
촬영, 성범죄인가
아닌가(2019.10.28.)



05

스포츠 보도 가이드라인

올림픽, 월드컵 등의 전 국민이 즐기는 스포츠는 방송사의 실시간 중계는 물론, 지면에도 결과 요약 및 인터뷰 보도 등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보도 영역입니다. 스포츠는 몸을 활용한 경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몸에 대한 이미지와 기술이 중요한 보도 내용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몸에 대해서 성차별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취재 시에 확인하기

CHECK LIST

여성 선수 및 여성 경기에 대한 존중	남성 선수라면 하지 않을 질문을 준비하지 않았는가?	
	경기의 결과와 과정에서 드러난 선수의 역량을 중심으로 질문을 준비했는가?	

 **스포츠 영역은 성별로 나누어 경기가 개최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인터뷰에서 여성 성별을 강조하는 질문이 등장하기 쉽습니다.**

IOC, 여성 스포츠 선수에게 하지 않아야 할 질문

22

<https://stillmed.olympic.org/media/Document%20Library/OlympicOrg/IOC/What-We-Do/Promote-Olympism/Women-And-Sport/Guide-Genders-Balanced-Representation.pdf>

IOC는 특별히 여성 스포츠 선수에 대해 보도할 때 자주 일어나는 문제적 관행을 짚고, 대안적 보도 방식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²²

첫째는 여성 스포츠 선수의 성과나 경기 결과에 대해서 인터뷰할 때 성별을 개입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체적 상황과 관련하여 선수 본인이 먼저 언급하지 않는 한 굳이 인터뷰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한국 상황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가족 중 특히 누군가의 아내임을 부각하여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는다.
- 경기 결과를 설명함에 있어 여성적 특질이나, 여성성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는다.

2 보도 시에 확인하기

CHECK LIST

여성 선수 및 여성 경기에 대한 언급	여성 선수를 외모 중심으로 묘사하거나, 여성 선수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는가?	
	여성 선수를 특별한 맥락 없이 아내 혹은 어머니 역할과 관련하여 설명하지 않았는가?	
	여성 경기의 특성을 남성 경기보다 열등한 것으로 묘사하지 않았는가?	
여성 선수의 경기 장면에 대한 영상 및 이미지 보도	여성 선수의 외모를 중심으로 영상화하지 않았는가?	
	특별한 맥락 없이 여성 선수의 신체 일부를 부각하여 영상화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스포츠 중계 보도에서는 성별 고정관념 등 고정관념에 근간한 보도의 문제가 좀 더 심각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 영역 자체를 남성적 영역으로 간주해오면서, 여성의 스포츠 영역은 부가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스포츠는 여성이 잘 다를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보고 여성 아나운서와 해설자를 육성하지 않아, 이번 월드컵 중계에서도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기용을 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영역 아나운서 및 해설자의 성별 대표성

지난 2021년 도쿄 올림픽 보도에서 지상파 방송 3사에서 중계 여성 캐스터는 단 2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2022년 월드컵 중계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올림픽에는 여성 경기가 있지만 월드컵에는 없다는 단순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 연구에서 스포츠 기자의 성비 불균형을 지적해 왔습니다. 스포츠는 남성의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미디어가 사회 여론을 선도하기 위해서 여성 대표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스포츠 중계에서 나타나는 성별 고정관념 표현과 대안어

스포츠 중계에서 수차례 문제 지적을 받았던 것은 바로 여성 스포츠를 전문성의 영역이 아닌 여성의 미나 신체적 조건과 관련시키는 관행입니다. 여성으로 신체가 강인하거나 우락부락하지 않은 이미지여서 아기자기한 경기를 한다는 등으로 남성 경기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 기준을 내면화하여 중계 중 발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 경기와 달리'와 같은 말은 피해야 합니다. 스포츠는 내적 성취 기준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 영역입니다.

CHECK LIST

여성 선수를 외모 중심으로 묘사하거나, 여성 선수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는가?

여성 선수를 '미녀' '미모' 등 외모와 관련하여 지칭하는 표현 → 여성의 경기력과 관련된 표현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보통은 선수로 지칭해도 무방하며, 선수 앞의 지칭어로 쓴 것이라면 없어도 좋은 표현입니다.

Q 사례

| 미녀검객, 엘프, 얼짱, 미녀, 미녀새, 여제, 여자 펠프스, 요정, 꽃, 여왕, 여우, 얼음공주, 미녀 궁사

Q 사례

| 오늘 승리의 여신은? 수원 현대건설-인천 흥국생명 삼산체육관서 4번째 맞대결(2023.1.11.).

| 개 숙인 배구여제(2023.1.5.).

더불어 치어리더를 묘사할 때 불필요한 외모 묘사를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수에 대한 외모 묘사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치어리더 묘사에서 여전히 유지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Q 사례

| 치어리더 늘씬늘씬(2023.1.4.).

| 이기적인 각선미의 치어리더!(2023.1.17.).

여성 스포츠 선수와 남성 스포츠 선수를 묘사하는 언어의 차이

미국 Women's Sports Foundation 은 여성 선수와 남성 선수를 묘사할 때, 여성 선수는 외모에 집중한 표현을

23

https://femikiwi.com/w/2016.%EB%A6%AC%EC%9A%B0_%EC%98%AC%EB%A6%BC%ED%94%BD_%EC%A4%91%EA%B3%84_%EC%84%8B1%EC%BO%A8%EB%B3%84_%EB%BO%9C%EC%96%8B

쓰고 남성은 신체적 역량에 집중한 표현을 쓴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한국에서도 동일합니다. 가장 많은 자료가 아카이빙된 2016년 리우 올림픽 중계 방송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²³

Q 사례

수영 여자 배영 100m 예선 1조 중계 - 1위를 한 13세 네덜란드 선수에게 “박수 받을 만하죠, 얼굴도 이쁘게 생겨 가지고”

유도 선수 인터뷰 - 은메달 후 인터뷰 중 “가장 꾸미고 싶을 20대인데?”라는 자막과 함께 머리길이와 스타일을 바꿀 생각이 없는지 질문함.

- 여성은 아내나 어머니 역할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보도 지향

✓ CHECK LIST

여성 선수를 외모 중심으로 묘사하거나, 여성 선수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는가?

남성에게는 아빠나 남편으로서의 자격, 역할을 강조하지 않고 여성에게만 강조하는 것은 여성의 영역을 가정에 한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정관념적 빌화입니다.

Q 사례

여도 여자 53kg급 중계 : 조정식 선수의 선전에 대해 두 딸을 둔 엄마의 힘인가요, 라고 언급(2016.8.8)

펜싱 여자 플뢰레 32강 중계 : 아나운서가 남현희 선수를 소개하며 엄마 검객이라고 수식(2016.8.10.)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열등하거나 해당 스포츠 영역에 적합하지 않다는 함의가 담긴 언급

✓ CHECK LIST

여성 경기의 특성을 남성 경기보다 열등한 것으로 묘사하지 않았는가?

여성 경기이므로 남성 경기와 다르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스포츠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남성 경기 기준으로 여성 경기를 판별하려는 것입니다.

Q 사례

- 여성 배구는 남성 배구에 비해 아기자기한 맛이 있습니다.
→ 여성 배구와 남성 배구 경기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성 선수가 활을 쓸 때에는 남성과 달리 파워 그 자체보다는 과녁에 대한 섬세한 조준이 돋보입니다.
→ 남성 경기와 여성 경기의 경기 차이를 성별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사례

- 여자 펜싱 에페 중계: 여성 선수가 철로 된 장비를 다루는 걸 보니 인상적이네요
싱크로다이빙 여자 결승: “(중국 선수들에게) 여자 선수들 같지 않고 남자 선수들 같이 기술력이 좋으며 파워풀하다”

스포츠 사진과 영상 보도

CHECK LIST

여성 선수의 외모를 중심으로 영상화하지 않았는가?

특별한 맥락 없이 여성 선수의 신체 일부를 부각하여 영상화하지 않았는가?

여성 선수의 외모가 부각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비판한 바도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요정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경기 과정의 역동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정지된 이미지에서 여성의 얼굴형이나 신체 비율 등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체조와 같이 신체의 굴곡을 드러내는 옷을 입은 경우뿐 아니라 배구나 농구와 같은 스포츠에서도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부각하는 중계 화면이 사용되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1년 도쿄 올림픽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방송 보도 가이드라인에서 “불필요하게” 화장이나 머리, 손톱 모양, 복장 같은 “외모”나 “은밀한 신체 부위”에 초점을 맞추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4

[https://engage.gettyimages.com/
guidelines-for-women-in-sport](https://engage.gettyimages.com/guidelines-for-women-in-sport)

미국의 게티 이미지²⁴는 기사 사진을 공급하는 주요 정보원으로써, 여성과 여성 청소년의 운동 사진을 제공함에 있어 여성 선수들이 어떻게 보이는지(외모)에 집중하지 말고 여성 선수들이 어떤 것을 성취했는지를 중심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라 사진 제작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은 것 있습니다.

- 여성 스포츠 선수의 특성과 역량의 모든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총체적으로 묘사하였는가?
- 여성 스포츠 선수들의 특정한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성적 의미로 읽힐 수 있게 하지 않았는가?
- 스포츠가 진행되는 동안 그룹 혹은 개인으로 느끼는 감정과 다양한 순간들을 반영하고자 하였는가?
- 여성적이지 않은 몸이나 신체를 다양하게 반영하고, 신체 크기나 외형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최종적으로 제시된 체크리스트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의 연령, 인종, 능력, 현실적 신체 외형 등 다양성에 집중한다.
- 여성은 수동적이지 않게, 행위 중심적으로 보이게 한다.
- 남성은 보다 협력적이고 조력적인 모습을 보이게 한다.
- 여성 스태프들을 가시화한다.

06

더 생각해 볼 내용들

‘음란물’에 대한 고민

음란물은 현재 형법의 표현입니다. 음란물의 사전적 정의는 성적 흥분을 야기하는 저속한 영상물로, 아동청소년 대상의 음란물도 법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은 착취적 상황에 놓이기 쉽기 때문에 이를 음란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법적 용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음란물을 성착취물로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제기됩니다. 음란물 제작 시의 인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현재 음란물로 유통되는 영상의 상당수가 불법 촬영물인 한국 상황에서, 이 표현을 맥락에 따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후속 보도란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 것일까?

아동학대 보도 가이드라인의 경우, 단일 사건은 사건 단순 보도로 그칠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지속적 보도가 아동의 신원 누출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트라우마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후속 보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후속 보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기하는 후속 보도는 사건의 종합, 향후 대책, 공동체의 변화를 위한 보도로 사건을 반복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 아닌, 사건의 반복적 재현은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영상 보도에서 가해자의 말은 절대 포함되지 않아야 할까?

방송 보도에서 가해자의 언어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얼마나 나쁜지를 직접 알리는 것이 좋다는 인식에서입니다. 사건을 제시하려다보면, 기자의 발언이 아닌 배경 사건 정보로 사건 내용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당 보도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가 널리 알려지는 효과보다는, 아직까지는 이 때문에 성범죄에서는 언제나 피해자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더 강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방송 보도 등에 가해자의 말이나 표현이 필요하다면 직접적 가해 표현보다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진술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며, 표현의 일부를 비프(beef)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말은 앞서 설명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칙에 입각하여 최소 한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 사건의 심각성을 알릴 수 없지 않을까?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한겨례에서 먼저 보도하였으나, ‘강간 노예’등의 자극적 타이틀을 채용한 타 언론사 기사를 통해 널리 알려지고 국민의 공분을 얻어 관련 수사 및 처벌이 활성화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보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범죄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을 경우, 사건 이해도가 낮아질 수 있어 의제 설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의 양상이 복합적이고 다양해짐에 따라 범죄의 구체적 양상을 자세하게 알리지 않으면 시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 언론사의 보도 이전에 이미 시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2일,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이름의 청와대 청원이 있어 보도되기 시작했고, 관련 취재 보도가 1,2월 중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추적단 불꽃의 활동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엇에 집중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특히 성폭력 범죄의 양태를 상세하게 보도하는 것은 모방 범죄의 우려를 키우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심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종 성범죄의 수법을 알리는 것은 정보 제공의 차원도 있습니다. 동일 수법의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를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저널리즘 공동체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25

홍주현. (2018). 뉴스생산 환경에 따른 방송 보도의 선정성 네트워크 분석·프레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7), 103-119

선정적이지 않은 보도에 대한 고민이 요구됩니다. 저널리즘의 선정성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추측이나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 성범죄 사건이나 성범죄 행위를 반복해서 보도하는 것, 폭행의 수준을 자세하게 시각화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²⁵ 사건의 문제를 보도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에게 트라우마를 발생시킬 정도로 폭행의 순간을 자세하게 보도하는 것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선정적인 보도와 사건의 범죄적 속성을 보도하는 것 사이의 경계를 단순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보도 시 관련된 고민과 성찰이 지속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보도로 인한 생각지 못한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미리 고려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이슈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아동청소년 성학대, 아동청소년 납치 등 아동 관련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별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해당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아동청소년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학대와 관련 없는 납치 사건의 경우에도 성학대가 있었을 것이라 가정하면서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성학대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피해자를 비난하

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합니다. 이는 보도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여 대중들의 반응이 특정한 방식으로 유도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성별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도 관련 사건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청주에서 일어난 청소년 성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서, “청주 중학생 사건”으로 표현한 언론사와 “청주 여중생 사건”으로 표현한 언론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청주 중학생 사건으로 보도하였다고 해서 사건의 본질과 재판 과정을 전달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건에 꼭 필요한 정보인지, 관습적으로 특정한 의미 없이 포함하는 정보인지 그리고 그 정보가 뜻하지 않은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젠더 보도 기자에 대한 공격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조직의 대응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조직의 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한국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문제는 언론사가 기자의 피해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언론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자에 대한 공격에 언론사 차원의 대응을 선언하고, 피해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6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83044?posInSet=1&queryId=df6dd63c-166c-43f8-a38f-09e2ab8896fd>

더불어 공격의 주요 매개가 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변화를 유네스코는 촉구합니다. 유네스코는 2022년 발간한 보고서 “The Chilling: assessing big tech's response to online violence against women journalists”²⁶를 통해, 플랫폼 간 협력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 반복적 가해 행위자에 대한 규제,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통한 알고리즘 조정, 악성 봇 형성 행위 금지 등 의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와 플랫폼 모두가 젠더 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와 제도를 만드는데 착수해야 합니다.

07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❸ 언론보도와 성평등 체크 리스트

취재 시	취재원의 성별 등은 다양한가?	
	취재원을 선정할 때 성별에 따라 관련 영역을 한정하여 생각하지 않았는가?	
	취재원에게 질문할 때 성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한 질문은 없었는가?	
보도 시	보도에 사용된 표현과 어휘 중 성차별적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이 사용되지 않았는가?	
	제목에 성차별적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대결 구도를 만들고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직접 인용 표시 등을 활용하지 않았는가?	

❹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보도 체크 리스트 : 취재 시에 확인하기

피해자 보호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취재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가?	
	피해자가 신원을 밝히고자 할 경우, 이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였는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접 인터뷰가 아닌 다른 대안적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피해자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관련 정보를 동의 없이 노출하지 않았는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안정 상태가 확보된 상태에서 취재하고 있는가?	
	피해자의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황인가? (인터뷰 통역 선정 및 장소 선정 등)	
	피해자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가?	
	피해자에게 취재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렸는가?	
	피해자의 과거 경험, 사회문화적 배경 및 종교, 인종 등의 맥락에서 민감한 문제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는가?	
	급작스럽게 인터뷰를 종료하지 않았는가?	
가해자 관련 정보 수집	가해자 관련 정보 과정 및 수집 내용이 피해자에게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였는가?	
	사건 관련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질문을 하지 않았는가?	

❸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보도 체크 리스트 : 보도 시에 확인하기

피해자 보호	피해자의 신원과 관련되었거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는가?	
	사건과 관계없는 피해자의 과거에 대한 정보나, 피해자의 일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는가?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고자 하는 경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피해자의 진술을 이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는가?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불필요하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은가? 해당 피해 정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가?	
	피해자를 동정적 시선으로 보아 무력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상황에 한정하여 묘사하지 않았는가?	
디지털 성폭력 보도에서의 피해자 보호	불법 촬영물 유포와 관련하여 키워드, 사이트 명, 플랫폼 및 검색 건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조합하면 손쉽게 해당 영상을 찾아낼 수 있게 하지 않았는가?	
가해자 관련 정보 제공	가해자의 삶과 일상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가해자의 말을 사실 확인 및 비판적 점검 없이 그대로 전달하여 사실상 사회적 변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는가?	
2차 피해 방지	사건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을 수 있다는 수사 기관의 보도 자료, 혹은 관계자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고 있지 않은가?	
	사건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을 수 있다는 수사 기관의 보도 자료, 혹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였는가?	
	사건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을 수 있다는 수사 기관의 보도 자료, 혹은 관계자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했는가?	
	사건의 정황에 대한 설명에서 특정한 고정관념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기사 댓글을 통한 2차 피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조직 치원의 조치를 고려해 보았는가?	
제목과 표현 어휘	제목에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성폭력 범죄 보도에서 주의해야 할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재판 중인 성희롱 성폭력 범죄 사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변호인이나 지인, 피해자의 변호인이나 지인 등의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경우 이를 보도할 만한 충분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가해자의 변호인이나 지인의 말을 보도하고자 할 경우 피해자 측에 사실 확인 및 반론에 대해 취재하였는가?	
가정 폭력 및 교제 폭력 관련 보도	사적 영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책임을 명확하게 묻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범죄가 유발했을 것이라 생각하도록 보도하지 않았는가?	
	폭력 양상을 상세하게 재현하는 표현을 쓰거나 영상 등 이미지를 포함하지 않았는가?	
	가정 폭력,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 가족 유형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가?	
	아동의 경우, 아동이 성장한 이후에도 트라우마를 자극할 만한 현장 영상 및 관련 이미지 자료를 포함하지 않았는가?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의 제목 명명	피해자의 이름이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표현을 기사 제목으로 쓰거나 사건 명명으로 사용하지 않는가?	
스토킹 및 메타버스 성희롱 등 신종 성범죄	신기술과 관련된 범죄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여 모방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았는가?	

🟡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보도 체크 리스트 : 보도 후에 확인하기

피해자 지원 정보 제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후속 보도	후속 보도를 통해 젠더 기반 폭력에 내재한 구조적 차별의 문제를 의제화하였는가?	

🟡 이미지 사용 체크리스트

고정관념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 이미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가?	
성적 대상화	기사 내용과 무관한 성적 대상화된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젠더 기반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이미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가?	
	사건의 내용을 재연하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스포츠보도 체크리스트 : 취재 시에 확인하기

여성 선수 및 여성 경기에 대한 존중	남성 선수라면 하지 않을 질문을 준비하지 않았는가?	
	경기의 결과와 과정에서 드러난 선수의 역량을 중심으로 질문을 준비했는가?	

스포츠보도 체크리스트 : 보도 시에 확인하기

여성 선수 및 여성 경기에 대한 언급	여성 선수를 외모 중심으로 묘사하거나, 여성 선수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는가?	
	여성 선수를 특별한 맥락 없이 아내 혹은 어머니 역할과 관련하여 설명하지 않았는가?	
	여성 경기의 특성을 남성 경기보다 열등한 것으로 묘사하지 않았는가?	
여성 선수의 경기 장면에 대한 영상 및 이미지 보도	여성 선수의 외모를 중심으로 영상화하지 않았는가?	
	특별한 맥락 없이 여성 선수의 신체 일부를 부각하여 영상화하지 않았는가?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

 전국인력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NATIONAL UNION OF METALWORKERS